

한 정 원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가정폭력 쉼터 이용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연구

200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이 주 연

가정폭력 쉼터 이용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연구

한 정 원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이 주 연

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연구자가 가정폭력 쉼터에서 종사하며 쉼터를 이용하는 여성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들이 겪는 취업 및 거취 등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쉼터를 이용하게 된 여성들은 쉼터를 이용한 후 귀가 하기도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여 소송을 하거나 합의를 위한 수순을 밟기도 한다. 또한 이혼과 무관하게 독립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독립을 하고자 하지만, 독립을 위해서는 취업을 통한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며, 자신이 생활할 수 있는 거취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등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쉼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구가 있었으나 쉼터 체계 및 쉼터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쉼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이 단지 쉼터 체계 및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 여성노동시장의 전반적인 특성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이용 중인 여성 9명에 대한 1:1면접을 통하여 이들의 취업 경험을 살펴보고 쉼터 이용 중 직업훈련과 취업의 결정 요인 및 방해 요인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경제활동참가를 위한 여성의 인적자본의 부족 및 그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하는 노동시장의 특성과 쉼터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쉼터 이용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 보충되어야 할 정책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전반적인 한국 여성노동시장의 특성으로 여성들이 결혼,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취

업단절과 재취업 문제, 성별직종분리 현상과 이를 기반으로 나타나는 성별 임금격차의 문제, 여성의 비정규직 문제 등을 기존 연구 및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정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증상, 컴퓨터 이용 후 퇴소 준비 등에 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하였다.

Ⅲ장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연구 참여자 9명의 취업 경험을 분석하고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지 못하고, 결혼과 출산, 육아 등 생애과정을 통해 취업을 중단하여야 했으며,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 심리·정서적 증상, 사회적 고립 등은 컴퓨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여성의 생애과정과 폭력으로 인해 컴퓨터 이용 여성들의 취업경험은 단편적이고 비독립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Ⅳ장에서는 컴퓨터 이용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직업훈련과 취업에서의 문제점과 퇴소 후 거취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를 보충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정폭력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피신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게 된 여성들은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쉽게 직업훈련을 선택할 수 없으며, 학력, 나이 등을 불문하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여성들의 취업은 식당, 마트 등 단순노무직, 서비스직에 한정되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거취문제와 관련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이후에도 생활할 수 있는 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가정폭력 가해 남성에게 피해 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컴퓨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공고히 하기 위해 보충되어야 할 정책적 지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 및 취업을 위해서는 컴퓨터 이용 여성들 개개인의 욕구와 적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직업상담사 등 전문가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둘째, 직업훈련을 받거나 취업을 할 경우, 아동과 동반하여 컴퓨터를 이용

중인 여성은 그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이들을 위한 육아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직업훈련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컴퓨터 이용 여성들은 교통비조차 해결하지 못해 쉽게 직업훈련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 이들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직업훈련 이후 안정적인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취업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들마다 이혼이나 취업 등에 대한 계획은 개인마다 다르게 정해짐으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일찍 퇴소하게 되거나 직업훈련 중 퇴소하게 된 여성에게도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취업에 있어 4대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가해 남성에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일곱째, 2006년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단기 컴퓨터와 증장기 컴퓨터로 분리되었으나 경우에 따라 단기 컴퓨터에서도 최대 6개월이라는 이용 기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컴퓨터에서 퇴소하여 독립한 경우에도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으로부터 노출되지 않거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조치가 요구된다.

아홉째, 컴퓨터 이용 여성들은 가정폭력의 피해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무기력,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하며, 이러한 현상을 단기간에 치유되지 않는 만큼 원한만 사회적응을 위해 지속적인 심리 상담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목 차

논 문 개 요

I.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연구 참여자	7
II. 연구 배경	13
1. 여성의 취업단절과 재취업	13
2. 쉼터 이용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기존 연구	18
3. 해외사례	20
III. 가정폭력 쉼터 이용 여성의 취업장애 요인	26
1. ‘여성’의 낮은 인적 자본	26
2. 결혼 및 출산, 육아로 인한 취업 단절	28
3. 가정폭력으로 인한 취업 단절	34
4. 단편적, 비독립적 취업	43
IV. 가정폭력 쉼터 이용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한계	47
1.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과 한계	47
2. ‘직업훈련’ 과 ‘취업’ 사이의 갈등요인	58
3. 쉼터 퇴소 후 지원	69
V. 결론 및 요약	80
참 고 문 헌	
ABSTRACT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가정폭력으로 인해 쉼터를 이용하게 되는 여성들은 쉼터에서 생활하는 동안 귀가, 독립¹⁾, 이혼 등을 결정하게 된다. 그 중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독립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취업과 거주지 마련은 독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폭력 상황으로 귀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지원으로는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고 퇴소 후에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주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쉼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쉼터를 이용하는 여성들 중 독립을 생각하는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이란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나 많은 쉼터 이용 여성들이 전업주부이거나 비정규직 종사자로 취업의 미경험이나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형태 속에 있기 때문에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독립하기를 원하면서도 안정된 취업을 하기 어려우며, 특히 주변의 도움 없이 거주지를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가정폭력의 피해로 인해 쉼터를 이용하게 된 여성들 중, 폭력 남편에게서 독립하기를 원하는 여성이라면 안정된 취업과 쉼터에서 퇴소한 이후

1) 부부가 동거의 의무에 따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지 않고 각자의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경우, 흔히 '별거'라고 한다. 그러나 별거는 일반적으로 부부가 쌍방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해 남성을 피해 온 쉼터 이용 여성의 경우와는 '같이 살지 않는' 상황의 맥락이 다르며, 일반적인 별거의 정의 속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을 내포하는 것이며, 동시에 가해 남성으로부터 벗어나 홀로 선다는 의미로, '별거'가 아닌 '독립'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의 거주지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 경험이 전혀 없거나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일을 했던 여성들이 안정된 직업을 갖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동안(기관에 따라 9개월까지 연장가능한 곳도 있다.) 퇴소 후의 생활할 공간까지 확보하는 것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폭력으로 배우자 남성에 의한 아내 구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배우자 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한편, 가정폭력의 유형을 신체적 폭력에 한정하여 볼 수 있지만, 가정폭력이 가부장제의 산물로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려는 기제로 나타나며,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는 방식은 단순히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가정폭력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 외에도 언어 폭력, 심리적·정서적 폭력, 사회적 폭력, 경제적 폭력 등을 포함하여 보아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인 쉼터는 1983년 한국여성의전화가 설립되고 전화상담을 하기 시작한 이 후, 1987년 한국 최초로 쉼터를 설립하여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쉼터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 수익사업 등을 통해 시설을 운영하였다. 1989년 4월 1일 제정된 모자복지법 제19조 4호의 일시보호시설에 관한 규정을 통해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과 아동을 일시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수준이 미약하였고, 1998년 7월 1일 시행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통해서야 법적인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쉼터는 피해 여성을 위해 ①숙식을 제공하고, ②심리적인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해 상담 및 치료를 하며, ③질병 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등의 의료 지원을 하며, ④수사기관

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하고, ⑤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며, ⑥자립자활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²⁾

한편, 컴퓨터 이용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국여성의 전화, 1997)에 의하면, 컴퓨터에 있을 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점은 ‘적당한 직업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으로, 응답자의 42.1%가 이를 지적하였다. 송성자(2005)의 가정폭력 컴퓨터 이용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가장 힘든 것(복수 응답)’이라는 질문에 대해 ‘경제적 문제(20.4%)’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퇴소 후 주거(15.5%)’문제라고 응답했다. 또한 ‘퇴소하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들’에 대한 질문에서는 ‘거처문제’라고 응답한 경우가 29.3%로 가장 많았고, ‘생활비 문제’가 23.0%, ‘취업문제’가 21.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경제적 문제, 퇴소 후 주거 문제, 거처문제, 생활비 문제, 취업문제 등은 모두 컴퓨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 두 조사는 각각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1997년 12월) 및 시행(1998년 7월) 이전과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이나 두 조사의 결과를 볼 때, 컴퓨터 이용 여성들의 거취 문제와 취업 문제는 그 해결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법 시행 이후 7년이 흐른 뒤 진행되었던 송성자

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보호시설의 업무] ①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에 대하여는 제1호 외의 업무의 일부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2005)의 조사결과를 볼 때 여전히 컴퓨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알맞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터 이용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지원은 직업 훈련, 취업알선이지만, 컴퓨터 이용 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이란, 단순히 직업을 갖는다는 의미 외에도, 주거지를 확보한다는 개념을 포함하여 보아야 하며, 퇴소 후 주거지 확보를 포함한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는 이상, 다시 폭력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컴퓨터 이용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봐야 한다.

컴퓨터 이용 여성들은 이용 기간 동안 신체적 폭력에 따른 외상 치료를 비롯하여, 개인별·집단별 심리 상담과 휴식을 통해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개인에 따라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도 하며, 경제적 자립까지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한정되어 있던 컴퓨터 이용 기간은 이용 여성들의 모든 욕구를 다 충족하기에는 촉박한 기간이다. 특히 재판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1심 판결로 종결된다 할지라도 최소 6개월을 예상하고 재판이 시작되는데, 6개월 동안 재판을 위한 가정폭력의 증거자료 및 진술서를 수집하고, 소장을 작성하고, 재판에 참여하면서, 심리 상담을 받고, 직업훈련을 하고, 취업까지 하여 퇴소 후 생활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데에는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 6개월'로 컴퓨터의 이용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한편으로 컴퓨터 이용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컴퓨터 이용 여성의 경제적 자립 측면에서는 방해 요인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04년 여성가족부는 전국 규모의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하였고, 2005년 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이용기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보호시설 이용 여성의 자립기반을 다지기 위한 장기 시설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2006년 4월 가정

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최대 2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장기 시설이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는 현재의 단기 쉼터의 수도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 단기 쉼터의 수는 약 50여개로 쉼터 마다 이용 가능한 수는 다르지만 대부분 10~15명, 많게는 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으며, 여성인권운동단체나 복지단체, 종교단체를 비롯하여, 구청 등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곳도 있으며, 개인이 사회사업을 위해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쉼터의 내부규칙도 쉼터마다 다르며,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 수준 역시 천차만별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단기 쉼터의 개설 상황을 볼 때, 중장기 쉼터의 시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얼마나 확보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은 성별직종분리, 비정규직, 저임금, 경력단절 등의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생애사건으로 인해 30대 초 크게 떨어지고, 이 시기가 종료되는 시점인 40대 전후부터 다시 취업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재취업 시 이전 직업보다 낮은 직종의 직업으로 취업하게 되며, 이로 인해 대부분 여성의 재취업은 과거의 직업과 무관하게 서비스 분야와 단순 노무직 등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여성의 재취업은 여성의 취업률 상승이라는 순기능적 측면 보다 불안정 고용, 저임금, 비정규직의 여성화, 여성의 비정규직화, 성별직종분리 등의 역기능을 가져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전선의 외곽에 있던 중장년층의 쉼터 이용 여성들이 안정적인 취업을 하고 개인의 독립된 주거지를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쉼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문제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 전반의 문제와 통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중장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력개발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폭력'과 '쉼터 이용'라는 경험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신체적인 상처 치

유, 심리적인 상처 치유와 함께 취업을 하고, 거주지를 확보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그 동안 가정폭력 쉼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한 연구는 쉼터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 쉼터에 대한 법적·정책적 비판, 쉼터를 이용하게 된 결정 요인과 이혼을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어렵고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드러내 왔다. 그러나 쉼터 이용 여성의 재취업이 어려운 것은 단순히 쉼터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쉼터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적 문제로만 보기는 어려우며 현재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이 갖는 구조적 현상과 관련하여 봐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여성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한 원론적 논의나 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 등에 관한 연구는 아니며, 가정폭력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립의 초석으로 취업을 해야 하는 쉼터 이용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노동 시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생생히 듣고, 쉼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지원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쉼터 이용 여성의 취업 경험을 살펴보고, 둘째, 쉼터 이용 중의 직업훈련 및 취업의 결정 요인과 방해 요인을 검토하며, 셋째, 쉼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지원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연구 참여자

여성학의 학문적 발달은 1960년대 페미니즘의 ‘제2물결’을 거치면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여성학 연구는 기존의 학문 속에 있는 개념과 이론 등을 재평가하고, 연구 과정 속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방식과 연구 결과 속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특성을 드러내는데 치중하고 있었다. 이 후 여성학은 과학적 연구 방법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여성학 연구 방법, 여성주의적 연구 방법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왔다.

여성학 연구 방법론에서는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에서 중요시 하는 ‘객관성’의 개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기존 학문이 객관성을 중시하는 반면, 실제로 연구 과정과 결과가 모두 진정으로 객관적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비판하였다. 여성주의 입장 인식론에서는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에서의 ‘객관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여성학 연구 방법에서의 ‘객관성’과 ‘여성주의적 객관성’에 대해 고민을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Harding은 객관성이라는 개념을 버리는 것보다 객관성의 개념을 여성학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개념화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로 인해, Harding은 ‘정당화의 맥락(the context of justification)’ 뿐 아니라, ‘발견의 맥락(the context of discovery)’의 영역까지 객관성을 확장시킴으로써 보다 ‘강한 객관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Hesse-Biber, Leavy & L. Yaiser, 2004 에서 재인용)

또한, 입장 인식론은 사회 구조에 따라 계층화된 사회에 초점을 맞춰 발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 상,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사람들’, ‘사회계층 상, 하층에 위치한 사람들’, ‘억압받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연구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Smith는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경험이 여성주의 인식의 토대가 된다고 보았고, 여성의 경험을 연구하는 것은

여성의 삶에 한정된 연구가 아니라, 남성의 삶과 경험, 남녀 관계에 대한 새로운 비평적 질문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의 학문 연구에서 보다 더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학문에서의 '객관성'의 오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여성주의적 '객관성'을 발전시키는 것이다.(Harding, 2004 에서 재인용)

한편, 스테이시(Stacy)는 양적 방법론에 기초한 기존의 사회과학 방법론을 통해서는 여성의 경험이 충분히 다뤄질 수 없음을 깨닫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질적 방법인 문화기술지적(ethnographic method) 방법을 사용하여 여성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녀는 문화기술지적 방법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접촉과 개인적인 라포(rapport)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인 여성을 더욱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고, 더욱 착취적일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윤택림, 2002) 이러한 문제제기는 여성학 연구를 위해 진행되는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권위를 내세우거나 연구 참여자를 대상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였다.

여성학에서는 실증주의가 갖고 있는 이분법을 비판하면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를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고 본다. 더 나아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분리로 인해 연구 참여자가 '대상화', '타자화'된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또한, 여성학에서는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의 '착취'와 연구 참여자에 대한 '대상화'와 '타자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론적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질적 방법 중 생애사, 구술사 등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면접하여야 할 경우에는 인터뷰 시간을 책정하거나 질문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연구 참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의 일방적인 질문이 아닌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에 대한 질문도 해결해 주는 등 상호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사이의 라포 형성이나 신

회감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여성학 연구 방법론에서는 연구자가 자신의 권위나 권력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연구 참여자를 ‘대상화’, ‘타자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종사하고 있는 서울의 한 쉽터 이용 여성 중 9명과 1:1 면접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다. 연구자가 종사하고 있는 쉽터 이용 여성들이 본 연구의 참여자이기 때문에, 인터뷰 이 후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논문에 인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 관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인터뷰 시 추후의 상황에 대해 본 연구에 기록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자가 쉽터에 종사하며 쉽터 이용 여성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이 처한 문제를 연구자에게 토로하는 과정은 본 연구의 주제 선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연구자는 쉽터 이용 여성들의 심리적·정서적 상황을 판단하여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며, 인터뷰 요청이나 진행에서 ‘쉽터의 종사자’라는 직책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이자 내담자인 이용 여성들이 부담을 느끼거나 인터뷰가 강제적이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종사하고 있는 쉽터 이용 여성 중 9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본 연구의 주제를 고려하여 귀가 보다 이혼 및 독립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를 우선하여 선정하면서도 다양한 연령, 학력을 고려하였다. 직업 훈련과 취업에 관하여서도 다양한 생각을 듣기 위해 직업 훈련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취업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등을 고려하였으며, 쉽터 이용 기간과 관련하여도 3주~6개월까지 다양하게 선정하였다.

인터뷰는 1:1 면접 방법을 채택하여 약 2시간 내외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당시 쉽터를 이용 중인 여성의 경우 쉽터 내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퇴소한 여성의 경우 약속시간을 정하여 주로 카페에서 인

터뷰를 진행하였다. 면접을 통해 녹음과 기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연구 참여자 중 녹음을 거부한 2명의 경우 기록만 하였다. 9명 중 1명은 직접 면접을 거부하여 이메일을 통해 1차 인터뷰를 하였으며, 답변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된 부분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대화로 보충하였다. 또한, 인터뷰 당시 컴퓨터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생활했던 연구 참여자들의 신분노출 위험이나 컴퓨터이용의 비밀보장 등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가명은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가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실명과 유사하거나 실제 예명으로, 본명처럼 사용된 적이 있던 가명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임의대로 수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은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며, 혼인기간도 5년에서 27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폭력 쉼터라는 특성 상 현재 이혼 소송 중이거나 이혼을 한 경우도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과거 취업 경험은 마트 계산원, 부동산 중개사무소, 식당일, 공장에서의 단순노무직, 간호사, 자영업, 강사, 사회복지사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쉼터에서는 개인의 흥미와 관심사를 토대로 개인이 원하는 직업훈련을 최대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취득에서 간병인, 피부관리사, 제과제빵,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 웨딩플래너 등 다양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직업 훈련 후 원활하게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아 직업훈련 직후 곧바로 취업된 경우는 간병인 자격증을 취득한 경아의 사례가 전부이며, 상담원 교육 후 다른 쉼터에 취업한 은미의 경우도 곧바로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아 퇴소 후 다른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취업할 기회를 기다려야 했다. 피부관리사를 취득한 유리는 자격증을 취득한 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취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나이가 많고 무경력자라는 이유로 취업이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간히 마트에서 판매직 등 단기,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 서진은 직업 훈련 보다 당장 생활비 마련이 급한 경우로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을 선택하였으

며, 연정의 사례는 현재 웨딩플래너 교육을 받는 중이이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학원 수강료 외의 기타 부대비용 마련을 위해 마트에서 주말동안 시간제 근로를 하였다. 미연은 건강 상의 이유로 직업 훈련을 받지 않았으며, 취업도 하지 않았다. 성희는 3주 만에 퇴소하여 컴퓨터 이용 중에 직업 훈련을 받거나 취업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본 연구를 위한 인터뷰는 연구자가 종사하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여성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그로 인해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파악한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터뷰 도중, 현재 컴퓨터에서 공동체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이혼 소송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으며, 과거의 취업경험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편의 폭언, 집기파손, 신체적 폭력 외에 의처증을 수반한 사회적 폭력, 살림을 꾸려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 폭력 등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인터뷰 후, ‘이야기를 하니 속이 후련하다.’, ‘당시에는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었는데, 내가 그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자꾸 감추는 것보다 드러내는 게 나를 위해서라도 좋은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아직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기억이 살아나 힘들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후회스럽다.’는 등 인터뷰 도중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힘들어 한 참여자도 있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 중 이미 컴퓨터에서 퇴소한 여성 중에는 ‘밖에 나와 보니 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 줄 사람이 없다. 이 후에도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보여, 심리적, 정서적 치유는 단기간 동안 어려우며,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이름(가명) 나이 학력	입소기간 및 현재 거취 (인터뷰 당시)	혼인기간	자녀	과거 취업 경험 및 자격증	컴퓨터 이용 중 취업 및 자격증 취득	현재 취업 상태
서진 27세 고졸	2개월 퇴소 후 독립 (퇴소 직전)	6년	5세 3세	계산원	1. 건물 청소 2. 계산원 (취업 후 독립)	계산원
경아 51세 고졸	6개월 만료 퇴소 후 독립 (입소 5개월)	27년(소 송 중)	27세 여 24세 여 11세 남	부 동 산 중 개	1. 텔레마케터 2. 간병인 자격취득 및 취업	간병인
미연 54세 중졸	6개월 만료 퇴소 후 타 쉼터 (입소 3개월)	16년(소 송 중)	27세 여 22세 남	식당일, 포장일(가 내근로)	없음	미취업
선아 37세 초졸	6개월 만료 퇴소 후 독립 (퇴소)	10년 (이혼 후 입소)	11세 남 9세 여	공장	1. 제과제빵 과정 3개월 수강	의류 판매직
유리 39세 전문대중퇴	6개월 만료 퇴소 후 친정 (퇴소)	11년	13세 여 (동반)	간호사, 일반사무	1. 피부관리사 자격취득	판매직 (시간제)
성희 46세 고졸	3주 퇴소 독립 (퇴소)	18년	18세 남 15세 남	자영업 (음식점 및 PC방)	없음	미취업
은미 46세 대졸	6개월 만료 퇴소 후 타 쉼터 (퇴소 직전)	17년	17세 여 15세 남	강사, 식당운영	1. 텔레마케터 2. 가정폭력 상담 원 및 성폭력 상 담원 자격증 취득	타 쉼터 상근직 으로 취업
연정 35세 전문대중퇴	입소 중 (입소 2개월)	13년(소 송 중)	12세 여 7세 남	식당일, 안내원, 가내 근로	1. 판매원 2. 운전면허 취득 3. 웨딩플래너 교 육 수강 중	판매원 (시간제)
주영 30세 전문대졸	5개월 퇴소 후 동생 집 (퇴소)	5년	4세 여 (동반)	사 회 복 지 사, 교 육 청 사 무직	1. 운전면허증 1종 취득 2. 어린이집 사무직	미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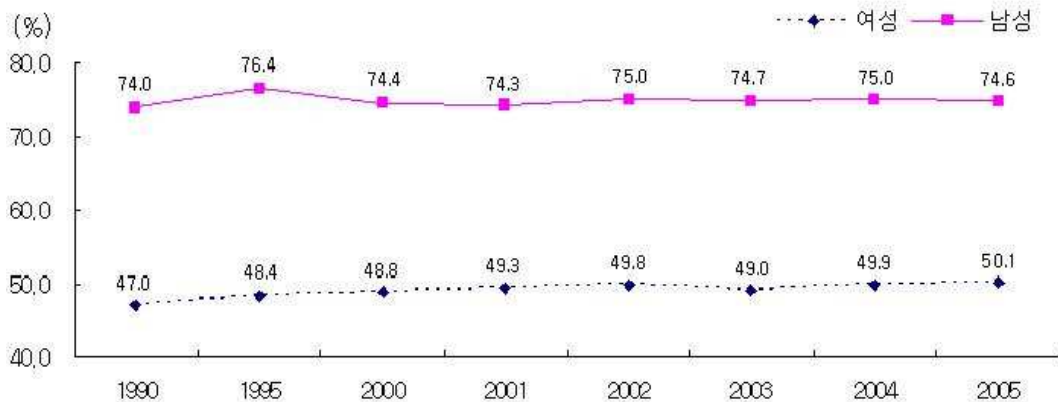
II. 연구 배경

1. 여성의 취업단절과 재취업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1987년 12월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발효된 이후 1990년에 들어서면서 47%이상 50%이하 수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율 수치가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며, 2005년에는 50.1%로 절반을 넘어섰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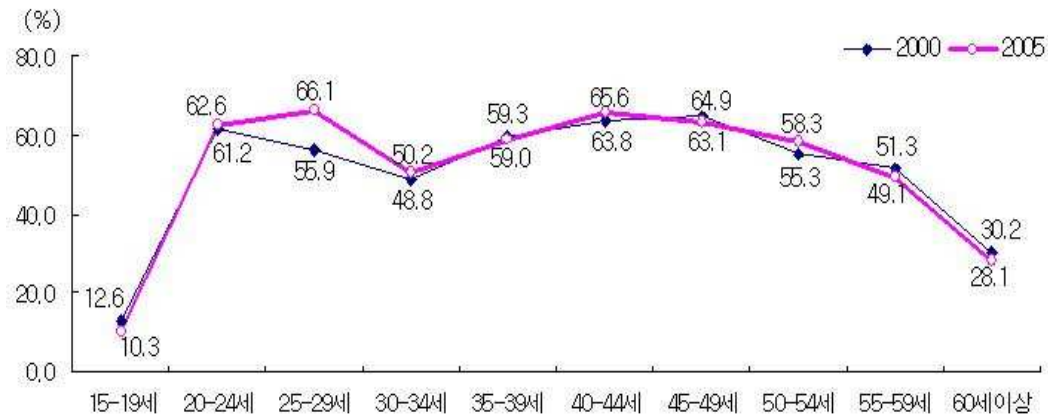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취업률은 25세~29세 66.1%에서 30세~34세 50.2%로 하락하고, 다시 35세~39세의 여성 취업률은 59.0%, 40세~44세 구간에서 65.6%로 증가하여, 결혼, 출산, 육아기인 30세~34세 사이의 여성의 취업률이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여성의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그래프 형태는, 점차 완화되고

<그림 1>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및 출처 : 통계청 「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그림 2>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자료 및 출처 : 통계청 「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M자형 곡선을 보이고 있다(<그림 2> 참조). 이는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이 학업의 종료 및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결혼, 출산, 육아의 영향 속에서 취업을 선택하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여성의 취업단절과 재취업과 관련하여, 박수미(2002)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적자본요소를 ‘교육 수준, 취업 경력’으로 보고 인적자본론을 비판하였다. ‘교육 수준’의 경우, 여성들의 경제활동 행위에 일률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심지어 경제활동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특히 한국 사회에서 고학력 여성들의 취업률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적자본요소인 ‘교육 수준’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 의미있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취업 경력’은 ‘근속년수’와 ‘이전 취업직종’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을 보이는 한국 여성노동시장의 특성은 여성들을 잦은 경력단절자로 취급하게 하였고,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라는 인적자본요소가 여성들의 취

업직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 ‘취업 경력’ 역시 유의미한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김교성(2005)은 사건사 분석을 통해 실업자의 재취업 여부와 재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등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로 남성이 여성보다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정규직으로의 재취업이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여성과 고령층은 재취업도 어렵지만, 재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고 보았다. 또한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높은 교육을 받은 실업자일수록 빨리 재취업을 할 수 있으나 학력과 무관하게 상황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한다고 하였다. 이는 인적자본 수준보다는 성별에 따라 분절된 노동시장의 구조에 기본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실업자의 안정적인 고용형태로의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성과 연령에 의한 차별이 폐지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재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박수미(2003)는 학력이나 첫 취업 경력과 같은 여성의 인적 특성은 재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 첫 출산, 결혼, 6세 미만의 자녀 양육기 등과 같은 생애사건은 재취업률을 유의미하게 낮췄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둘째, 셋째 자녀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들과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들은 재취업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두 번째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유형은 잦은 ‘경력변동’이라기보다 취업경력 상의 ‘저열함’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성미(2006)는 여성의 재취업은 연령이 높을수록 재취업이 잘 되지만 30세 이상이 되면 재취업 가능성이 다시 낮아지며, 기혼 여성일수록, 영유아기의 자녀가 있을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았다. 이는 여

성의 경우 가사와 육아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한다. 교육수준과 관련하여서는 교육수준과 재취업 결정에 대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재취업 고용형태는 연령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며,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재취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직장이 비정규직인 경우 재취업 역시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안정성이 낮은 직종에 종사했던 경우 또 다시 재취업에 있어서도 불안정 고용형태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기존 연구를 통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은 결혼, 출산, 육아기인 30~34세 사이에 노동시장에서 퇴출하였다가 35세 이후 다시 재취업을 시도하며, 남성보다 여성이, 미혼 보다 기혼이, 연령이 높을수록, 영유아기의 자녀가 있을수록 재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종합하여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재취업 고용형태에 있어서, 여성의 고학력, 이전직장의 정규직 등은 여성의 비정규직 재취업 가능성을 낮춰주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에 따라 재취업을 하기 때문에 학력, 이전직장의 고용형태 등은 크게 의미있게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직업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서비스 및 판매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2002년 38.77%에서 35.65%로 최근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는 것은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순노무직이 20.32%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는 여성의 노동이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에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의 큰 특징이 저임금, 불안정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체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장지연(2001d)은 여성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과정은 학력과 같은 인적자본에 따른 영향이나 가족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일자리의 특성 자체

에서 구조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여성취업포털 사이트 우먼잡링크(www.womanjoblink.co.kr)에서 재취업에 성공한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 직장이 이전 직업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75.8%로 조사되었으며, 재취업 직종은 서비스직이 28.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18.8%로 집계되었다(연합뉴스, 2006. 1. 13일 자). 이러한 조사결과는 기혼 여성의 이전 취업 경력이 재취업에 영향을 주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기혼 여성의 재취업이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에 집중됨으로써, 여성의 취업이 저임금, 불안정 고용직에 몰리게 되어 전체적인 여성의 취업에 있어 질적 저하 현상을 심화시킨다.

또한, 2004년 취업포털 사이트인 잡링크(<http://www.joblink.co.kr/>)에서 실

<표 2> 여성의 직업별 취업률

(단위 :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6월*
전문·기술·행정관리직	14.87	16.92	16.90	17.51	18.51
사무직	16.00	16.43	16.89	17.36	16.69
서비스·판매직	38.77	37.18	37.37	36.93	35.65
농림어업직	9.83	9.09	8.16	8.04	8.83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	20.53	20.38	20.68	20.16	20.32

* 2006년은 6월 자료이며, 2002년 ~ 2005년은 연말 자료임.

자료 및 출처 : 통계청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DA7A27&IDTYPE=3&A_LANG=1&FPUB=3)

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 구직자 중 81.3%가 정규직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재취업을 한 기혼 여성 중 68.6%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연합뉴스, 2004. 11. 17일 자).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비정규직 취업을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선택이 아닌 현재 우리나라 여성이 처해있는 노동시장의 구조가 여성의 비정규직 취업을 이끄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컴퓨터 이용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기존 연구

컴퓨터 이용 여성 중 대다수의 여성들이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을 선택할 경우, 취업과 향후 거주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자력으로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퇴소 후 다른 컴퓨터로 연계되기도 하고, 친구나 친척, 지인들의 집에서 임시적으로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일정 기간 이후 또 다시 주거지 확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거주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컴퓨터 이용 여성들이 퇴소 후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최소한 당분간은 지인의 집에서 생활하더라도, 홀로서기를 위해서 안정적인 직업은 퇴소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이다. 컴퓨터 이용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영란(2004)의 연구에서 컴퓨터 이용 여성들의 퇴소 후 계획은 취업 및 자립과 관련된 계획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실제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는 19.6%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중 ‘프로그램이 없다.’, ‘기간이 맞지 않는다.’ 등의 응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컴퓨터의 직업 훈련과 관련된 프로그램 체계가 컴퓨터

이용 여성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은정(2005)의 연구에서는 취업과 독립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는데, 가정 폭력 피해 여성의 직업과 결혼형태에 대한 분석에서 귀가한 집단의 82.4%가 전업주부였으며, 임시거처로 옮기거나 자립한 집단은 각각 50%만이 전업주부인 것으로 나타나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일수록 독립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선숙(2005)은 ‘여성폭력쉼터 퇴소자의 사회적응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서 월수입이 높을수록, 주거공간이 확보될수록 사회적응이 높고, 생활만족도도 높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쉼터 프로그램의 도움이 크다고 느낄수록 사회적응이 높고, 생활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쉼터를 퇴소한 여성들의 사회적응과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지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미영(1999)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이혼 후 사회적응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남편의 폭력으로 가출한 상태에서 이혼하거나, 폭력에서 벗어나는 일을 우선으로 하다보면 재산 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이 출발해야 한다는 경제적 압박은 이혼 후 가장 큰 문제이며,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자녀를 데리고 나오지 못하여, 자녀를 두고 왔다는 죄책감은 이중의 고통을 준다고 보았다. 따라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의 기회를 주고, 기거할 수 있는 장소와 생활보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석한(2001)의 연구에서 쉼터 이용 여성들은 경제적 자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쉼터 거주 기간을 6개월 이상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쉼터 이용 기간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을 받고, 퇴소 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취업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직업훈련에 있어서의 교육비에 대

한 정부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함께 고용안정기관 등을 통한 취업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송성자(2005)의 쉼터 이용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쉼터 이용 여성들이 ‘경제적 문제’, ‘퇴소 후 주거’ 등의 문제를 가장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립을 계획하는 여성이 59.7%로 나타난 반면, 거처문제에 대한 걱정이 29.3%로 나타나 퇴소 후 거취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 해외사례

1) 미국의 쉼터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는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긴급보호를 위한 쉼터(emergency shelter), 전환기의 적응과 자립준비를 위한 중간의 집(translational housing), 주거지원정책(HUD, 연방정부 주택도시개발성)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시 보호시설로서의 성격이 강한 쉼터와 그 다음 단계인 중간의 집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후원금, 기부금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주거비 지원, 공공주택 입주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쉼터는 단기 보호시설로 법률적 지원과 숙식 제공, 동반한 아동의 보육과 교통 및 취업 알선 등도 제공하고 있다. 중간의 집은 자립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태진, 2005)

긴급보호를 위한 쉼터는 현재 우리나라의 단기 보호시설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중간의 집 역시 2006년 4월 개정된 가정폭력방지법을

통해 새로이 규정, 시행된 중장기 보호시설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장기 쉼터는 최대 2년 동안 주거지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중장기 시설의 이용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중간의 집을 이용한 이후에도 정부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 정부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거비를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에 대해서는 긴급 주거비를 지원하기도 하여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한 주거비 지불 여부나 기간의 연장 등 다양한 대안을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쉼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네소타주의 세인트 폴 법률부조회에서는 1972년 여성들을 위한 전화 상담을 시작한 이래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담이 많아지자, 피해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3년 Women's House라는 보호시설을 만들게 되었다. 아리조나주의 Rainbow Retreat은 1973년 남편들의 음주로 학대받거나 집에서 쫓겨난 여성들만을 위한 시설로 설립된 이후, 현재는 폭력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폭행이나 학대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하여 개별 상담 및 집단 심리 치료 등의 일정을 꾸리고 있으며, 독립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Domestic Crisis Outreach Center는 1977년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78년부터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쉼터를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24시간 가정폭력 상담 전화를 받고 있으며, 상담을 통해 필요한 여성은 쉼터로 안내한다. 쉼터에서는 법률적, 의료적, 재정적 도움과 취업을 위한 지원

을 받게 되며, 상담원, 사회사업가, 직업상담원, 아동상담가 등 각 분야별 전문 요원들이 종사하고 있다. 또한 가족치료사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개별 및 집단 상담 외에도 법원으로부터 의무적인 치료명령을 받은 (Court-Ordered Programs) 가해 남성의 상담과 치료도 담당하고 있다. 이상 언급한 곳은 단기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쉼터로, 기본적으로 임시적이고 응급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후 중간의 집으로 연계되기도 하며,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을 공급받게 된다.(김승연, 2004. 박영란, 2004)

2) 영국의 쉼터

영국의 1996년 The Family Law는 가정폭력의 범위를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폭력의 범주에서 더 확대시켜 정서적인 폭력과 경제적 폭력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가정폭력을 가해자가 권력을 남용하는 한 형태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의 실질적인 욕구와 권리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으로부터 벗어나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거나 현재 살고 있는 집 혹은 그 지역에서 가해 남성을 퇴출시키는 등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다.(이선주, 2002)

The Family Law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騷방명령(non-molestation orders)과 점유명령(occupation orders)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있다. 비騷방명령은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하는 폭력을 정지시키고, 폭력에 상응하는 위협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는 빈번한 전화를 통한 괴롭힘이나 직장에 찾아와 괴롭히는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 명령은 특정기간을 정하기도 하고, 무한정으로 정하

기도 하며, 다른 법정 명령이 있을 때 까지 등 기간 설정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 점유명령은 폭력의 피해자인 개인 혹은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으로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강제적으로 그 집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머무르고자 하는 권리를 실현하면서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있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가해자가 축출되는 공간은 주택에서의 퇴거이거나 그 주택이 위치해 있는 특정지역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강제적으로 퇴거된 경우라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명령 등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영국은 가정폭력이 홈리스(homeless)의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977년 The Housing Act는 홈리스에 대하여 안정된 영구주거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안정된 주거를 갖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가정폭력의 피해자들도 홈리스의 정의 속에 포함시켜 The Housing Act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들이 안정된 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태진, 2005)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홈리스가 될 위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임시주택(temporary accommodation)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2년으로 두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 여성 중 자녀를 동반하고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연령상·정신상 또는 신체적인 장애의 이유 및 다른 특별한 이유로 인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경우 등은 공공주택배당에 있어 우선권을 갖게 될 수 있다.(이태진, 2005)

영국에서의 쉼터는 폭력의 상황에서 급박하게 피신한 여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일시적인 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지방자치 단체가 2년간 머물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경제적 자립, 정서적 안정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캐나다의 쉼터

캐나다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쉼터에서의 일시적인 보호를 받은 이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 Paths는 1984년 설립된 민간단체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자녀를 위한 중간의 집(Transition and Interval Houses), 임시보호쉼터(Temporary Emergency Shelters)와 쉼터를 퇴소하고 난 이후 거주할 수 있는 2단계 쉼터(Second Stage Shelters)가 운영되고 있다. 위니페그 시의 2단계 쉼터는 1년 동안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행동치료, 여가활동, 교육활동, 문화 교육, 생활기술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스페인어, 중국어, 불어 등 다양한 언어를 통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퀘잘 가족의 집(Quetzal Family Home)은 온타리오주에 위치하여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위해 설계한 2단계 쉼터로, 냉장고, 오븐, 세탁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용품 등이 갖춰진 상태이고, 방은 크고 작은 방들이 다양하게 있어 동반 아동이 있는 경우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박영란, 2004)

4) 홍콩의 쉼터

홍콩의 조화의 집(Harmony House)은 1985년 홍콩의 민간단체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시작 당시에는 순수한 민간단체인 여성단체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어왔으나 1989년 이후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시작하였다. 조화의 집은 신체적, 심리적, 성적 학대에

대한 치료와 상담, 아동 학습지도, 아동 심리치료,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자조그룹, 대중교육, 조사 연구 작업 등의 프로그램을 꾸리고 있으며, 상담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3개월의 체류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집으로 귀가하기를 선택한 경우 지역 내에 있는 가족상담소와 연계하여 남편과 함께 부부상담을 받도록 한다.

홍콩 정부에서도 여성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은 임시 보호시설로 미혼모들이나 학대받은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잠시 안정을 취한 뒤 사회복지기관, 상담소, 병원, 입양기관 등 개개인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김승연, 2004)

Ⅲ. 가정폭력 쉼터 이용 여성의 취업장애 요인

1. ‘여성’의 낮은 인적 자본

인적자본론에서는 여성은 남성보다 취업에 대한 욕구가 낮거나 결혼 후 가사노동에 집중하게 되어 취업을 위한 자신의 인적자본 개발에 필요한 투자를 덜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인적자본 개발은 개인의 선택으로 결정되어 진다기 보다 자신이 살아온 가족적 맥락,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교육수준은 ‘여성’이 아닌 ‘가족’과 ‘사회’의 맥락 속에서 결정된다.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하다가 그만 뒀잖아. 대학은 또 미술을 했거든. 공예과. 오빠도 성악하니까 예체능계라서 돈이 많이 들잖아. 오빠 돈 대주기도 힘들니까 나보고는 알아서 다니라는 거야. 우리 엄마 생각이 여자는 얼굴 반반하면 시집가서 살면 된다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내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러면서 내가 벌어서 다녔지. 그러다가 한 학기 남기고 때려쳐 버렸지. 그래서 중퇴잖아. 근데 내가 웨딩플래너를 하려고 여기 저기 좀 알아봤다. 근데 최소 전문대졸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 후회돼. (연정, 35세)

연정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시절까지 운동을 전공으로 하다가 2년제 대학에 진학하면서 전공을 미술로 변경하였다. 대학에 진학한 후 부모님이 학비 지원을 해주지 않아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를 벌면서 3학기 까지 다녔으나 마지막 한 학기를 앞두고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반면, 자신의

오빠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대학을 졸업한 것에 대해서 ‘남녀차별’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연정은 웨딩플래너 교육을 받고자 하고 있으나 수강 후에도 ‘전문대 중퇴’라는 학력 때문에 취업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학력이 ‘전문대 중퇴’이기 때문에 현재 취업이 더욱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 안정적인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 차원에서 전문기술을 익힐 수 있는 직업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영문과에 합격을 했었는데 그 때는 가이드 같은 거 하고 싶었어요. 집안도 어렵고 그 때 생각에는 동생도 여자애이기는 한데 동생이 나보다는 나왔던 거 같아서 동생을 더 밀어주려고 합격은 했는데 안 갔죠. 그리고 마트에서 계산원하기 시작했구요. 욕심에는 다시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있죠. 아직 젊으니까... (서진, 27세)

서진의 가족 관계를 보면 여동생이 한 명 있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동생이 자신보다 학교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취직하였고, 인터뷰 당시에도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취직하여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하고 있던 계산원 일은 당장 필요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이혼이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다시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다.

연정과 서진 모두 현재 취직할 수 있는 일은 마트 계산원이나 판매원, 혹은 식당일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학력, 자격증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하지만,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고용, 낮은 복지 수준 등으로 인해 기피하면서도 ‘전문대 중퇴’, ‘고졸’이라는 학력으로 취직할 수 있는 곳은 마땅히 없는 것이 현실이며, 실제로 연정은 마트에서 시간제

판매직으로, 서진은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하였다.

우리나라 여성의 재취업은 앞서 연구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상 학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다수의 여성이 학력과 상관없이 비정규직으로 재취업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정과 서진이 자신의 취업이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으로 한정되게 되는 원인을 ‘학력’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학력’을 우선 시 하는 사회적 풍조가 내면화한 영향도 있다.

한편,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취업을 하고 퇴소 후의 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쉼터를 이용하는 6개월 동안 취업을 통해 당장 퇴소 후 주거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직업훈련을 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를 원하지만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쉼터 이용 여성에 따라 취업을 우선 시하기도 하고 직업교육을 우선 시 하기도 한다. 그러나 취업을 하고자 하면 단순 노무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게 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부정적이고, 직업교육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직업교육 훈련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당장 교통비조차 해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정과 서진은 ‘대학을 나왔더라면’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하게 되고, ‘대학을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되었다.

2. 결혼 및 출산, 육아로 인한 취업 단절

1) 결혼으로 인한 취업 단절

성별분업은 여성과 남성을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분리시키고 있으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통해 여성은 남성에게 예속된 형태를 보이게 된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시몬느 드 보부

아르의 말처럼 여성은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교육받으며 자라난다. 여성의 본질적인 역할은 가사노동과 육아로 한정되고, 반면, 남성의 역할은 여성의 내조를 받으며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학습되어, 결혼과 동시에 여성은 집안 일의 1차적 책임자가 된다. 이러한 사회적, 관습적 기준은 사회적·가족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에게 강요되기도 하고, 여성 스스로 내면화하기도 한다.

결혼하고서 일 안 했지. 집안 일 하기도 바쁘데 결혼해서 무슨 일을 해. (미연, 54세)

나는 부모님이 맞벌이였는데 그게 싫어서 결혼하면 집안 일만 하고 싶었어요. 대학 졸업하고도 결혼하고나면 일 할 생각은 없었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 낳아 기르고 그것만 생각했었죠. (은미, 46세)

미연은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집안 일을 도맡아 해야 했다. 은미는 부모님이 맞벌이였던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과 판단은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을 구분짓는 사회적 규범과 규합되며 미연과 은미로 하여금 ‘여성은 집안 일을 해야 집안이 잘 된다.’는 생각을 내면화하도록 하였다. 미연과 은미는 결혼 이후 취업하지 않고 집안 일에 충실하는 것이 여성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고, 아내와 남편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남편의 수입에만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이 살림을 꾸리기에 벅찼기 때문에 미연과 은미는 결혼 후 경제적 상황에 따라 취업을 해야 했다.

엄마는 무조건 집에 있어야 된다. 여자는 집에 있어야 된다. 여자는 밖에 안

내돌린데. 그래서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그래도 남자라고 꼴 같지 않게 남자라고 책임감도 있고 여자를 바깥으로 함부로 안 내돌리고 자기 와이프에 대한 생각은 끔찍하구나 비록 자기가 잘 건사는 안 하더라도 그런 거 하나는 바르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연정, 35세)

결혼 후에는 남편이 반대해서 일을 못했어요. (남편이 일을 못하게 했어요?) 네. 흔히들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여자는 집안 일만 잘 하면 된다. 그래도 나와서 돈벌겠다 그러면 무조건 싫어했으니까. (일 계속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일 하고 싶었죠. 근데 괜히 직장 나가서 싸움될 수 있으니까 아예 포기를 했죠. (유리, 39세)

연정과 유리는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반대로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연정과 유리 모두 결혼 전까지 작은 사무실이지만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었으며, 결혼한 후에도 어느 정도는 계속 일을 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남편은 ‘남성은 바깥일, 여성은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경제활동과 가사노동 사이의 선택과정을 볼 때 집안 내에서의 최고 결정권자는 남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편을 가장으로 보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작용하는 것이며, 아내인 여성은 가장인 남편의 통제 아래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자중학교에서 사무원으로 일했어요. 한 7년 쯤 일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 시작해서 결혼할 때까지 했으니까. (일은 왜 그만 두셨어요?) 결혼하니까 그만 뒀지. 나는 시골 살았고, 중매로 결혼했는데 남편은 서울 사람이었으니까 서울로 올라오느라 그만 뒀지. (서울 와서는 취직 안 하셨어요?) 결혼했는데 하긴 뭘 해요. 그 때는 결혼하면 일 그만 두는 게 당연한 거였죠. (경아, 52세)

호텔에서 일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해서 한 5년 6년 했나봐.
호텔에서 나이가 원체 26에 그만 뒀으니까 그만 둘 때 된 거지. 그 때도 거
기(재계약) 가니까 많아 그러더라구. (성희, 46세)

경아는 결혼 전 취업한 상태였지만 결혼과 동시에 퇴직하게 되었다. 경아는 결혼 후 퇴직에 대해 여성은 일을 하다가도 결혼하게 되면 퇴직하는 것이 당시의 사회적 관례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경아는 자신의 성격상 일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 상, 여성은 결혼하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고, 남편 역시 자신이 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성희는 결혼으로 퇴직한 것은 아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취직했던 호텔에서 26세가 되자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나이가 많다는 것이었다. 성희는 ‘나이가 많다’는 말의 의미를 ‘결혼할 때가 되었다’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당시 사회적으로 26세의 나이는 흔히들 규정하고 있는 ‘결혼적령기’였다. 사회적으로 뿌리 깊게 내려 있는 성역할 이데올로기에 따라 개인의 성격이나 욕구와 관계없이 성별에 의해 수행해야 할 일이 정해지며, 이는 여성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성역할 이데올로기에 따라 자신의 욕구와 무관하게 결혼과 함께 퇴직을 하게 되고, 이는 여성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연결되며, 이는 동시에 남성(남편)의 지배와 통제 속에 놓이기 쉽게 만든다.

2) 출산, 육아로 인한 취업 단절

최근 몇 년 동안 현저히 감소한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국가에서는 각종 보육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결혼한 취업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출산 계획을 늦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취업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불이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개인의 가족 계획, 가족 상황에서도 육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가족적 맥락에 따라 출산은 늦춰지고, 자녀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같이 살 때쯤(동거로 시작) 기업에서 하는 마트로 옮겼어요. 결혼하고 애기 임신했을 때에도 출산휴가 쓰고 다시 복직해서 일하고 했어요. 복직해도 재교육같은 것도 별로 필요없고, 하던 대로 하기만 하면 돼서 복직할 때 어려움 같은 건 없었어요. 근데 둘 째 임신하기 전에 또 옮겼었는데 (왜 옮겼어요?) 그 기업에서 하던 마트에서 복직하고 난 다음에 몇 달 있다가 다른 곳을 발령을 냈는데 그 새로 발령난 곳이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로 옮기느라구요. 근데 마트가 작은 데라서, 배가 불러오니까 ‘손님들이 보기 힘들어 한다.’그러더라구요. 그게 나가란 소리지 뭐겠어요. (서진, 27세)

출산 후 복직한 서진은 회사로부터 근무지 이전을 강요받았고, 새로 배정 받은 근무지는 출퇴근조차 어려운 지역이었다. 서진은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곳으로 취직할 수 밖에 없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이후 복귀한 경우 이전 업무와 동일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서진의 경우처럼 근무지를 이전시키는 등 근무를 지속할 수 없도록 근무조건을 변경하여 퇴직을 종용하거나 유도하기도 한다.

친정집에서 도움을 받고 살았었는데 그 때 제가 산후조리 강사를 했었어요. 근데 취업을 하고 애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 못 하겠더라구요. 내

애를 보고 가정을 먼저 꾸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서.. (은미, 46세)

둘째 아이 낳을 때에도 어차피 남편이 돈벌이가 좋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돈을 벌어야 겠다 싶어서 또 일자리를 찾아봤는데, 시어머니가 그만 두게 하더시더라구요. 살림 좀 하라고.. 그래서 그만 두게 됐죠. 애가 둘이 되니까 시어머니도 벅차셨겠죠. ‘나도 못 하겠다’ 하시더라구요. 그렇다고 생활비도 없는데 사람을 쓸 수도 없고 어린이집 같은데 보내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구요. 내가 마트에서 일해서 받는 돈이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빠듯하게 일해야 한달에 100만원 채우는데 애기 둘을 어린이 집 보내고 그러면 뭐하러 일을 해요. 내가 애를 봐야지. 그게 더 절약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그만 두고 놀러 앉는 수밖에 없었죠. (서진, 27세)

결혼 후에 교육청 사무일을 했었는데 시댁이 근처에 있어서 말이 많고 거의 매일 시댁을 드나들어 두 집 살림을 해야 해서 힘들어 하던 중에, 임신을 하게 되어 시어머니, 남편이 일을 그만 두고 남편 내조나 하면서 시댁일이나 잘 하라구 했어요. (주영, 30세)

은미, 서진, 주영은 출산 이후 육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일을 중단하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보육시설의 시설이용비를 여성이 취업을 해서 벌게 되는 비용, 즉 수입과 비교했을 때, 계속 일을 하는 것보다 가사노동과 육아에 충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취업상태를 굳이 지속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을 남성과 달리, ‘산업예비군’으로 보는 것으로, 여성의 1차적 의무는 가사노동과 육아에 있고, 집안의 ‘가장’인 남성이 ‘부양의무자’로서 경제적 뒷받침을 원만히 수행해내지 못할 때 여성은 남성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취업을 하게 된다. 때문에 여성은 취업을 한 뒤에도 1차적 의무를 지고 있는 가사노동과 육아에 소홀해서는 안 되며, 만약

가사노동과 육아에 결점이 생길 경우 여성의 책임이 되며 취업을 중단하는 것이 당연하게 된다.

또한 여성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 되고 있는 것도 여성이 남성보다 퇴직을 쉽게 선택한다는 것이 그 원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 여성이 70%를 육박하고, 여전히 여성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한다. 이렇듯 여성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는 현상 역시 경제활동이 여성의 주된 역할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며, 이러한 인식은 여성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즉, 여성 노동가치의 평가절하로 인한 저임금 현상은 여성의 (재)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경제권이 남성(남편)에게 있는 한, 여성(아내)은 자신의 의지대로 경제적 선택을 하기 어려우며, 생활비 지급 중단, 지출 영수증 검사 등은 남성(남편)이 여성(아내)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행사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가정폭력이다. 이 때문에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취업의 종료와 함께 남성(남편)에게 온전히 귀속되게 되는 경제권은 집안 내에서 여성(아내)에게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여성(아내)가 가져야 할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여성(아내)을 통제한다.

3. 가정폭력으로 인한 취업 단절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 외에도 언어 폭력, 사회적 폭력, 경제적 폭력, 심리적 폭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가정폭력은 보통, 여러 가지 폭력의 양상이 중첩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하위 내용을 강조하고자 신체적 증상, 사회적 고립, 정서적 증상 등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1) 신체적 증상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멍이나 찰과상에서 심한 경우 고막 손상, 장 파열, 골절 등의 증상도 보인다. 이러한 신체적 증상은 가시적인 영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있던 여성들에게는 취업을 지속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미연의 사례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식당일을 나갔다가 남편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하여 얼굴에 피멍이 들어 다음 날 출근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밖에도 예측할 수조차 없는 폭력은 미연이 취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다. 선아 역시 미연처럼 폭력으로 인해 취업 상태를 지속할 수 없었다. 특히 선아의 경우 신체적 폭력이 감금과 함께 일어나 행동에 자유가 없었으며,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 한 통을 거는 것조차 어려웠다. 유리는 남편이 자신에게 극심한 폭력은 행사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으나 휴게소에 일하던 중에 남편이 찾아와 자신을 괴롭히며 자신이 타 준 커피를 쏟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여 일을 그만 두게 되었다고 한다.

칼국수 집에 3일인가 나갔었는데 또 어느 놈이랑 붙어먹었느냐고.. 어느 놈이랑 바람났냐고 그러면서 때리는 거야. 주먹으로 맞고 구둑발로 채이고 얼굴이 여기 저기 붓고 터지고 그랬는데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또 그만 댔지. 그만 둔 게 아니라 나가지 못 했으니까.

(중략) 선생님도 알지만. 이런 데 칼로 다 찔리고, (얼굴에 칼에 찔린 흉터가 3 곳이 있다. 현재는 흉터가 크게 눈에 띠지는 않음.) 코도 주먹으로 한 대 딱 맞았는데 코뼈가 나간 거야. 그래서 2주정도.. 코에 기브스 하고 다녔지. 이도 빠졌지.(앞니 중 하나가 빠져 틀니를 함.) 이려고 사는 데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 벌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맞고서 누구 좋으라고 돈을 벌어. (미연, 54세)

알바를 하면... (공장에서) 옷 만드는데... 이런 데는 시간이 늦게 끝나거든요? 8시 넘어야 끝나. 근데 그런데서 또 의심을 하는 거야. (중략) 점심시간에도 들어오는 거야. 밥 먹겠다고.. 또 밥 먹다 말고도 와.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일을 계속 못해. 한 두 달하고 못하지.. 맞으니까... 몸도 아프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중략) 여기서 나오기 전에는 한 달을 밤낮으로 맞았는데.. 옷을 벗겨놓고 못나가게.. 밤에는 애들 자니까 불 꺼놓고 때리고, 낮에는 애들보고 나가서 놀라고 그러고 때리고... (선아, 37세)

남편이 구미 쪽으로 출장가는 바람에 나는 친정에 가게 돼서 나는 거기서 (추풍령에 있는) 휴게소에 잠깐 다녔구요.. 그 때도 술 먹고 오니까.. 일 할 때 오니까, 택시타고 그것도.. 택시비 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막 난동 피는 건 아니고 나한테만.. 커피마시라고 커피 타줬더니 막 옆지르고... 불러요. 오라고 그래서 가니까 나한테 ‘탁’ 쳐서 옆지르더라구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자주 있으니까 일이란 걸 아예 포기했죠. (유리, 39세)

한편,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은 폭력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외에도 만성 두통, 소화불량 등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도 있다. 연구 참여자 중 미연은 하루에 한 통씩 두통약을 복용해야 했을 정도로 만성 두통과 허리통증에 시달렸고, 경아는 스트레스로 인한 성대 결절이 발생했다. 또한 주영은 오래 전 있었던 폭력의 후유증으로 한 쪽 귀의 청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고 같은 쪽 얼굴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증상들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즉각적이고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드러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가정폭력의 결과로 생각하지만, 가정폭력의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

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만성 두통, 만성 피로, 소화불량, 불면증 등의 증상들은 장기간 지속되면서 건강 악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지장을 준다.

2) 의처증 등 사회적 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남성(남편)의 폭력은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여 여성(아내)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가정폭력을 신체적 폭력으로만 제한하여 볼 수는 없다. 사회적 폭력은 여성(아내)의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으로, 친구들이나 친정과의 교류를 막고, 취업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사회적 폭력은 흔히 의처증에서 비롯되는데 미연, 경아, 연정, 성희 등의 사례를 보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남성들을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여성(아내)들을 집밖에 나가지 못하게 저지한다. 이렇듯 여성(아내)의 사회생활을 통제하는 것은 여성(아내)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가로막아 폭력 상황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인간관계 형성조차 어렵게 만든다. 또한, 취업이 계속 저지되면서 여성들은 일신을 위한 별도의 개인 재산을 전혀 형성하지 못하게 되어 폭력 상황 속에서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폭력의 상황에 힘들어하면서도 자신의 상황을 터놓고 말할 친구나 친척들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이 홀로 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폭력의 상황 속에 방치된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다.

하도 생활비도 안 주는데다가 의처증이 심해서 밖에서는 일을 못하게 하니 까. 잠깐 집에서 리본 같은 거 받아서 뭐 만들어 붙이고 그런 거 한 적 있는데 남편이 술 먹고 거기(일하는 재료)에다가 물을 붓고 그래서 그것도 못했지. (거기에다가 물을 왜 부어요? 일하는 건데.) 물건을 밖에서 받아 오잖아.

그래서 나갔다 오면 남자 만나고 온 거라 그러고, 의처증이지 뭐.. 친정집에도 못 가게 하는데... (미연, 54세)

일하느라고 만나게 된 남자를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삼자대면하자고 난리를 치면서 칼 들고 쫓아가고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해요. (경아, 52세)

근데 차라리 그 때 내가 우리 신랑한테도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 . 어느 정도 돈을 좀 벌면 가게를 차려줘라. 속옷 가게라든가. 금은방 약세사리 같은 거. 보증금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화장품 가게나... 여자들만 들락날락하는 곳 있잖아요. 나이차이가 있다 보니까 은근히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직장은 못 다니게 하려고 하니깐 그게 안 되는 거야. 집 근처에 공장도 많아요. 아침에 9시에 갔다가 6시면 딱 끝나 그런데도 남자 직원들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연정, 35세)

내가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큰 애한테 엄마 목욕하고 올 테니까 아빠한테 전화오면 그렇게 말하라고 했더니. 애가 아빠한테 뭐 기분 나쁜 게 있었던지. 아빠한테 ‘몰라요’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물에 다 젖어서 갔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이 년이 어느 놓하고 자빠져서 자다가 머리로 못 말리고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서 저년이 나한테 뒤질려고 그런다는 둥 그러면서 칼을 들었대 났다 그러는 거야.(중략)나는 애들 학교 갔다 오는 거 보고 나가야 되니까. 같이 호프집을 해도 남편은 3시,4시 쯤 나가고 나는 5시쯤 나가. 근데 그 한 두 시간을 의심해. 그러니 다른 일을 어떻게 해 못하지. (성희, 46세)

미연, 경아, 연정, 성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없었다. 미연의 남편은 미연이 밖에 나가지 조차 못하도록 옷을 벗겨 놓은 채로 감금하다시피 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연정은 남편의 사업이 계속 잘못되면서 남편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명의를 빌려

주었던 자신까지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남편은 일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친정 식구나 시댁 식구가 운영하는 찜질방, 분식집에서 일 하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시댁 식구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일하는 동안 연정은 한 번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아이 분유값, 준비물값, 전기료, 가스비 등 그 때 그 때 필요한 돈만 타서 써야 했다. 연정은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급식비, 기타 준비물과 학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남편 모르게 일주일씩 단기간으로 일하거나 남편이 외출한 시간 동안을 이용해 일을 해야 했으며, 쉼터에 들어오기 직전에는 아파트 모텔하우스에서 일주일 단기로 계약하여 도우미 일을 하던 중 닷새 만에 남편에게 발각이 되었고 이로 인해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집을 나오게 되었다.

경아와 성희는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한 경우이다. 경아는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경아의 남편도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부부가 같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리게 되었다. 그러나 경아의 남편은 경아가 영업의 목적으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의심하여 부동산 계약을 방해하는 등 일을 전혀 할 수 없었다. 경아는 함께 사무소를 하면서도 자신을 계속 의심하자 나중에는 따로 사무실을 내기도 했었고, 남편의 의처증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성희는 결혼한 뒤 줄곧 남편과 호프집, PC방 등을 운영하며 생활해왔다. 부부가 함께 가게를 꾸렸기 때문에 항상 함께 있었으나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에도 의심을 하였고 손님과 눈만 마주쳐도 ‘무슨 관계냐’며 의심을 했다.

이들은 남편의 의처증으로 취업 뿐만 아니라, 장을 보러가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은 남편의 의처증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대책을 고민했었지만 같이 일을 하거나 따로 일을 하거나 자신에 대한 의심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남성(남편)이 여성(아내)의 인간관계, 사회생활 내지는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남성(남편)이 여성(아내)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아내)의 잘못이라기보다, 즉 의처증의 원인이 여성(아내)에게 있다기보다 남성(남편)의 생각과 판단이 의처증으로 발현되는 것 뿐이다. 따라서 폭력의 피해 여성은 자신의 문제점과 잘못을 발견하려 해도 그 원인을 찾기 어려움을 느끼며, 불분명한 원인으로 인해 의처증을 포함한 폭력에 대처할 방안을 찾을 수도 없다. 가정폭력의 원인은 가해 남성의 생각과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폭력의 행위자가 변하지 않는 이상, 폭력은 종결되지 않는다.

3) 심리·정서적 증상

앞서 살펴본 신체적 증상과 사회적 고립의 경우, 폭력의 가해 남성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점차 그 피해 증세가 회복될 수 있다. 고막파열이나 근육의 손상, 마비 등 경우에 따라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신체적 폭력은 시간에 따라 완전히 치료되며, 사회적 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 역시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시간을 두고 점차 회복된다. 그러나 심리·정서적 증상은 그 피해의 정도와 회복의 시간을 예견하기 어려우며,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심리·정서적 수준이 어느 선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쉼터 이용 여성 중 스스로 자신은 심리·정서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선불리 취업 전선에 나가거나 이혼 소송을 시작한 뒤 더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나는 쉼터 들어올 때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들어온 거라. 거기 규칙이 한 달 동안 취업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왔지. 근데 나오고 나니까 좀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건 있어. 일을 해도 손에 안 잡히고... (성희, 46세)

성희의 사례는 폭력 발생 즉시 쉼터로 온 경우가 아니라, 이혼에 대한 마음을 결정하고 쉼터에 온 경우이다. 쉼터마다 규칙의 차이는 있지만, 당해 쉼터의 규칙은 쉼터에 들어온 이후 한 달 동안 심신의 안정을 취하며 이후의 생활을 계획하는 것이다. 성희는 한 달 동안 이혼과 취업을 하지 못한다는 규칙 때문에 3주 후에 퇴소하였다. 그러나 퇴소 이후 오히려 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심신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을 나가도 계속 불안하고 집에 두고 온 자식들이 생각 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한 달 동안 일을 한 뒤 그만 두었다고 한다.

한편, 결혼 후 상당 기간 지속되었던 가정폭력 속에서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취업과 폭력으로 인한 불안감, 공포 등은 피해 여성들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든다. 특히, 미연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무기력은 피해 여성이 스스로를 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킴으로써 자립을 어렵게 한다.

이렇듯 신체적 폭력, 사회적 폭력 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저지는 피해 여성들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어 폭력 상황에서의 탈출과 홀로서기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직업훈련과 취업은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무기력과 우울 등에서 탈피하여 자신감과 자존감의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활비가 없으니까 식당에 잠깐 일했었는데 남편이 의처증 땀에 못 나가게 했지. 무슨 일을 해서 제대로 끝내본 게 없으니까 내가 또 일을 시작해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미연, 54세)

일 못 하게 하고 그러는 게 계속 되니까 내가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야. 그래도 여기 와서 상담 받고 그래서 지금은 이 일 저 일 할 수 있겠다 싶고, 또 그래야 하니까 하는데, 정신과 가니까 그게 딱 나와요. 우울증도 심하고 의

존성도 심하고 그렇게 딱 나오더라구요. 내가 의존이 심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퇴소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안 가고 혼자 살려고 하면 못 살 것 같애. 내가 그만큼 나약해졌다는 거야. (경아, 52세)

그 전에도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왜 그랬을까싶어요. 왜 이혼할 생각을 못 했을까... 경제력 문제도 있고, 내가 취직해서 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었던 거 같아요. 왜 폭력상황에 오래 놓여 있다 보면 무기력해진다 고 하잖아요. 자존감도 낮아지고. 제가 그랬던 거 같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오래 있을 생각이나 걱정 같은 거 안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은미, 46세)

아무도 몰라. 사람 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아는 사람도 드문데...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고 내 생활을 말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아무도 몰라. 근데 무기력해져요. 세상에 대해서..

(중략) 처음에는 처음에 왔을 때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비가 오면 다른 사람들은 비가 온다. 외롭다... 뭐 이런 식의 느낌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힘들면 힘들다는 거를 느끼고, 말할 수 있고... (선아, 37세)

경아는 쉼터에 들어오기 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하는 등 취업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의존적이고, 무기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은미 역시 무기력을 호소하며 취업을 하고 독립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쉼터를 이용하면서 직업훈련을 받고 단기간이지만 일을 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한다. 특히, 경아의 경우 간병인 훈련을 받고 취업하고 독립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정말 행복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해.’라며 경제적 자립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으로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선아 역시 취업을 하고 독립하여 지인

들과 생활하고 있다. 아직 스스로 ‘불안한 상태’라고 말하면서도 처음 컴퓨터에 왔을 때는 ‘비가 와도 아무 느낌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제는 힘들 때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 일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두렵고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오히려 일을 시작하니깐..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자신감도 생기고 재밌게 했어요. (은미, 46세)

제과 제빵을 배우면서 내가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좋더라구요. (선아, 37세)

무슨 일이든 하면 할 수 있구나. (경아, 52세)

이렇듯 신체적 폭력, 사회적 폭력 등 가정폭력은 피해 여성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폭력 상황에서의 탈출과 자립을 어렵게 만든다.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취업을 하고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가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직업훈련과 취업은 여성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무기력과 우울증, 자신감 상실 등 심리·정서적 증상에서 벗어나 사회 복귀, 사회 적응에도 일조하고 있다.

4. 단편적, 비독립적 취업

컴퓨터 이용 여성들은 대부분 자신을 전업주부라고 이야기하고, 평생 일을 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일의 종류나 기간에 상관

없이 대부분 취업의 경험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에도 모두 자신을 ‘전업주부’라고 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취업경험이 전무한 사람은 단 한 경우도 없다. 박영란(2004)의 조사에서도 현재 무직이라고 답한 경우가 72.6%로 나타났지만, 취업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83.6%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 중 미연, 유리, 은미 등은 취업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실제로 다양한 취업 경험과 창업 경험이 있었지만 돈을 번 적은 없다고 답하였다. 그 이유는 취업 기간이 짧고, 특히 식구들이 운영하는 자영업의 경우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연구 참여자들의 취업경험은 학력,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듯하면서도 가정폭력이라는 공통분모 상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단기간의 취업경험이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내 근로 내지는 무급 가족종사 등 비독립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 참여자 중, 선아, 연정, 미연, 주영, 서진, 유리 등은 남편의 경제적 폭력으로 인해 취업을 하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지만, 막상 취업을 하고 난 뒤에는 또 다시 남편의 신체적 폭력과 사회적 폭력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취업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허다했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기간은 짧게는 하루, 이틀에서 길어야 6개월이었다. 또한 이들은 식당, 모텔하우스 도우미, 청소, 공장에서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대표적인 비정규직 직종으로 취업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낮은 임금은 생활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한편, 연구 참여자 중 연정, 미연, 경아, 성희, 은미 등은 남편의 극심한 의처증으로 인해 집 밖에서의 일을 할 수 없었다. 연정과 미연은 물건을 받아서 집에서 작업을 한 뒤 다시 완성된 물건을 보내주는 일을 하였다. 공예를 전공한 연정은 수저의 손잡이 부분의 조각에 도금하는 일을 했고, 미연은 스티커를 비닐봉투에 넣어 포장하는 일을 했다. 그러나 이 일 역시 오래

할 수 없었다.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해 외부 사람과의 만남이 완전히 차단되고 통제되었기 때문이다.

또 경아와 성희는 남편과 같이 하는 일만 허락되었다. 경아는 부동산 사무실에 취직하여 일을 하던 중 의처증이 심한 경아의 남편은 경아가 일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경아는 남편이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도와왔고, 남편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손님들이 경아에게 물리자, 남편은 손님들과의 만남마저 통제하려고 들었다. 성희 역시 결혼 후 남편과 함께 호프집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극심한 의처증으로 인해 다른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한다. 하루 24시간을 남편과 함께 있어도 호프집에서 손님과 눈만 마주쳐도 의심을 했다고 한다. 연정의 상황도 조금은 다르지만 상황의 맥락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연정의 경우는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친정엄마나 시누이, 외삼촌 등 가족과 친척들이 하는 일에 동원된 경우이다. 성희와 연정은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해 배우자, 혹은 친척들의 일터에서 무급 가족 종사자로 일해야 했다. 성희와 연정의 남편이 일을 허락한 것은 남편인 그 자신, 혹은 그 자신이 아니더라도 여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친척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폭력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취업을 해야 하면서도 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신체적 폭력과 사회적 폭력으로 인해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지속하기 어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폭력으로 인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여성의 재취업이 단순노무직, 서비스직에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연구 참여자들 역시 이전의 취업경험과 상관없이 대개의 경우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으로 재취업하게 된다.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은 대표적인 비정규직 직

종인 동시에 여성 직종이기도 하며 학력, 연령, 전문성 등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취업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지만 반면 대체적으로 임금이 낮다. 이로 인해 일을 하는 대신 아이를 어린이 집에 보내야 할 때에는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라도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 의미가 줄어들게 되어 취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특성 상 가정폭력의 상황에 따라 자유로이 진입과 퇴출을 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임시변통하는 수단으로 취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간의 비독립적인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으로 는 여성이 자신의 경제력을 키우는 데는 부족함이 있으며 폭력 상황에서도 남성(남편)에게 의존하여 살 수 밖에 없게 된다.

IV. 가정폭력 쉼터 이용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한계

1.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과 한계

1)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체계

가정폭력 쉼터에서 진행되는 직업훈련의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복권기금을 비롯하여 각종 단체, 개인의 후원 및 기관 연계를 통하여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여성가족부의 복권기금은 1년 예산이 책정되어 지급되고 이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는 쉼터 종사자의 판단에 따라 진행된다. 즉, 개인별로 지정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집행된 예산을 분할하여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이용 여성들에게 고른 혜택이 주어지도록 결정하는 것은 종사자의 몫이다. 따라서 쉼터 종사자는 1년 동안 쉼터를 이용하게 되는 여성들의 수와 직업훈련을 원하는 여성들에 대한 예측과 대비를 하여, 하반기에 입소하게 되는 여성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쉼터 이용 여성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여 경우에 따라 식대 및 교통비 등 직업훈련 지원의 폭을 확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쉼터 이용 여성들 사이에서 형평성의 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직업훈련과 취업이 지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가정폭력 쉼터 이용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독립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가 없어 직업훈련의 경우 인력개발센터, 전문 학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취업의 경우 내담자가 직접 구직을 하여 취업을 하거나 종사자의 알음알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안정적인 취업이라기보다 쉼터 퇴소 후 생활에 대한 걱정으로 당장의 경제적 문제 때문에 학력, 연령, 경력

등과 무관하게 손쉽게 취업할 수 있는 일용직, 단순서비스직 등을 선택하여 취업하게 된다.

2) 직업훈련 및 취업 사례

연구 참여자들의 직업 훈련 사례를 살펴보면 4명이 여성가족부 복권기금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았으며, 1명은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로부터 지급된 지원금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았다(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지원금은 2006년 첫 시행임.).

은미는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가정폭력 상담원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가정폭력 상담원, 성폭력 상담원 교육을 수료하였다. 그러나 기간 만료로 퇴소할 당시에 취업이 되지 않아 다른 쉼터로 가야 했지만, 이후 다른 쉼터 시설에 취업이 되었다. 경아는 간병인 자격을 취득하였고, 국가적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간병인으로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병원을 계속 옮겨야 하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유리는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현재 나이, 무경력 등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마트에서 계산원 등의 일을 단기적으로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선아는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던 중 퇴소하게 되어 6개월 과정 중 3개월 과정만 수료하였다. 현재는 옷가게 점원으로 일하고 있다. 주영은 운전면허 1종을 취득하였다. 주영의 경우 사회복지를 전공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유아교육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운전면허 취득이 사회복지관이나 유치원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운전사를 따로 모집하는 곳도 있지만 영세한 시설인 경우 선생님이나 사무직 직원에게 운전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승합차나 버스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으로 다시 취득하였다. 면허증 취득 후 유치원에서 사무직으로 한 달간 일하였으며, 퇴소한 뒤에는 보다 더 안정된 일자리를 찾으며 쉬고 있다.

연정은 운전면허증이 그 동안 없었고, 쉽터에 들어와 취직자리를 알아보던 중 운전면허증이 필수라는 생각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고, 웨딩플래너 교육을 받고 있다.

서진은 쉽터의 종사자를 통해 고시원 건물 청소부로 취업한 바 있으나 당일 그만 두고 다른 취직자리를 알아보다가 소형 마트에 취업하였고 하숙방을 얻어 독립하였다. 은미와 경아는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문조사 기관에서 텔레마케터 일을 하게 되었으나 지방선거가 끝난 후 회사에서 일이 줄어들자 사원을 감원하고 시급을 낮추었고, 이로 인해 일을 그만 두게 되었다. 주영은 유치원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나 한 달 뒤 그만 두었다. 연정은 대형 마트에서 주말 동안에만 판매직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다. 퇴소한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웨딩플래너 교육을 다니기 위해 교통비나 기타 부대비용을 마련하고 있다.

미연은 6개월 동안 쉽터를 이용하면서 직업훈련이나 취업의 기회도 있었지만 본인의 건강문제로 거부하였다. 또한 이혼소송으로 인해 시간을 일정하게 내는 것을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6개월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이 먹어서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등 여전히 심리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상태였다. 성희는 3주 동안 이용한 후 퇴소하였기 때문에 쉽터에 있는 동안은 직업교육이나 취업을 할 수 없었다. 쉽터마다 규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 시설도 있는 반면, 일정기간 활동의 제약을 하는 곳도 있다.

<표 3> 연구 참여자의 직업훈련 및 취업

이름(가명)	쉼터 이용 중		현재 취업 상태
	직업 훈련	취업	
서진	-	1. 건물 청소 2. 계산원	계산원
경아	간병인 자격 취득	1. 텔레마케터 2. 간병인	간병인
미연	-	-	-
선아	제과제빵 과정 3개월 수강	-	의류 판매직
유리	피부관리사 자격 취득	-	판매직 (시간제)
성희	-	-	-
은미	1. 가정폭력상담원 수료 2. 성폭력상담원 수료	텔레마케터	타 쉼터 상근직으로 취업
연정	1. 운전면허 취득 2. 웨딩플래너 수강	판매원	판매원 (시간제)
주영	운전면허증 1종 취득	어린이집 사무직	-

연구자가 종사하고 있는 시설은 입소 한 뒤 약 한 달 여 동안 취업 및 직업 훈련을 제한하고 있다. 한 달 동안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 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심리 상담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것을 우선 시 하기 때문이다. 성희는 한 달 동안 취업도 못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쉼터에 들어온 지 3주 만에 성급히 퇴소하였지만 심신의 안정이 되지 않아 퇴소 후 불안과 긴장을 안고 있다고 하였다.

3)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의 한계

(1) 동기부여 및 정보제공 미흡

현재 컴퓨터에 있는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취업은 컴퓨터 이용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밖에 컴퓨터의 종사자가 개인적인 인맥으로 연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컴퓨터 이용 여성의 취업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취업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그 때 했던 그 일(고시원 청소일)은 그래도 선생님(컴퓨터 종사자)이 소개해주신 거라서 웬만하면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건 진짜 못 하겠더라구요. 간병인 자격증도 해보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 벌써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다른 일은 없나... 그런 거 있잖아요... (서진, 27세)

서진은 컴퓨터 관리자의 소개로 고시원 건물을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우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일어나갔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에 적응하지 못하고 하루 만에 일을 그만 두게 되었다.

한편, 서진과 경아에게 간병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서진은 경아와 함께 교육을 신청했다가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 끝에 취소하였다. 경아는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을 받기로 결정하였는데 서진은 아직 젊은 나이로 간병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반면, 경아는 나이로 인해 취업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서진은 곧 일자리를 알아보고 취업이 되어 독립하였다. 경아는 컴퓨터에서 생활하는 동안 생산직, 텔레마케팅, 백화점 판매직 등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하였으나 사실상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40세, 50세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경

아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으면 취업이 쉬울 것으로 판단하였고 간병인 교육은 수료 후 취업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적성과 무관하게 선택하였다.

대부분의 취업이 식당이나 마트 등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노동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취업에 있어 개인의 적성이 발현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직업훈련에서도 드러나는데, 피부관리, 제과제빵, 미용, 조리사 자격증 등은 학력과 무관하게 여성성이 강조되는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컴퓨터 이용 여성들의 직업훈련 역시 이러한 여성직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되고 있다. 이는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여성들에게 내면화 된 것이며, 이러한 여성직종 외의 새로운 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작용한다.

오랜 가정폭력 상황으로 인해 외부와 단절되고,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컴퓨터 이용 여성들은 무엇을, 어떻게,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현재 컴퓨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 밖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컴퓨터 이용 여성들의 특수성을 감안한 다양한 직업에 대한 교육과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개발도 필요하다.

(2) 컴퓨터 이용 기간의 구조화

컴퓨터 이용 여성들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6개월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주로 이혼 소송, 취업, 직업훈련 등 큰 틀을 생각하고 컴퓨터 이용 기간을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구조화하고 설계한다.

경아의 경우 소송의 진행과 함께 중간 중간 아르바이트도 하고 간병인 교육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아는 간병인 교육이나 아르바이트나 모두 단

기간에 끝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은미 역시 가정폭력 상담원(3월)과 성폭력 상담원(7월) 교육을 받았고 두 교육 모두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았으며, 그 중간에 취업을 잠시 하였었다.

먼저 좀 어디서 돈 좀 벌리고 그러더라도 먼저 배울까... 또 멀게 보면 빨리 배워놓는 게 좋으니까. 지금 계속 알아보고는 있어. 9월에 (웨딩플래너 교육을) 하는 곳이 있다 그러더라고. 배우면서 일을,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지.

(중략) 이혼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소송하는 데 뭐 준비하고 그런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 그게 6개월 안에 다 안 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송하는데도 돈이 드는데 일단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지. 소송해야지. 직업훈련도 받아야지..일단은 소송은 나중에 하는 걸로 그냥 지금 생각은 그런데.. 할 건 많고 시간은 없으니까 매일 매일 생각이 바뀌지. 내일 되면 또 어떨지 몰라. (연정, 35세)

연정은 인터뷰를 할 당시 직업훈련으로 웨딩플래너 교육을 받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혼 소송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취업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쉼터 이용 여성이 지갑조차 없이 맨 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당장 교통비나 소송을 위한 서류 접수비용 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직업훈련도 교육 수강비 자체는 지원이 되지만 교육을 받는 동안 드는 교통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정 역시 지갑도 없이 주민등록증과 당장 거주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2,3 만원을 들고 나온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당장의 교통비조차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외출복까지 마련할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취업

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로 취업을 하고 직업훈련을 늦추다 보면 원하는 교육이 개설되어 있는 기관이나 학원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고,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채 퇴소할 수도 있다.

여기 규칙은 한 달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소송을 하든, 취업을 하든, 교육을 받든 간에. 난 그게 답답한 거야. 나는 이혼 다 생각하고 왔는데 한 달 동안 안 된다 그러지. 나는 빨리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애들을 다 놓구 와서... (성희, 46세)

성희는 입소 뒤 한 달 여 동안 직업훈련과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당해 쉼터의 규칙 때문에 일찍 퇴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성희는 쉼터에 오기 전 이혼에 대한 마음을 굳히고 들어왔기 때문에 쉼터에 오면서는 소송을 시작하고 바로 취업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쉼터에 들어온 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3주 만에 퇴소하였다. 쉼터마다 규칙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나 가정폭력의 증상이 천차만별이듯이 미래 설계에 대한 적극성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원칙에 대한 예외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빨리 취직해서 자리 잡아야지. 딸들은 커서 그래도 좀 덜 걱정되는데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어서 개는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혼할 때 양육권 가져오려면 엄마의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며(인터뷰 당시 이혼 소송 중.), 그래서 판결나기 전에 내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빨리 취직하고 싶지. (경아, 52세)

경아는 입소한 뒤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소송을 통하여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라도 빨리 취업을 하고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했

다. 간병인 교육을 수료한 후 현재 간병인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이혼 소송이 지연되면서 쉼터 이용 기간이 만료되어 또 다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심리적인 안정과 소송에 대한 도움 등을 이유로 3개월 정도 더 머물고자 하였다. 그러나 법률상 단기 쉼터의 이용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퇴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 중인 경우 지속적인 법률지원과 이용 여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쉼터 이용 기간을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신 안정, 이혼 소송, 취업, 직업훈련 등은 그 경중을 논할 수 없을 만큼 쉼터 이용 여성들에게 모두 중요한 사안들이다. 그러나 한정적이고 촉박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무엇을 먼저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개인이 해결해야 하며, 그에 따라 쉼터에서의 직업훈련과 취업에 대한 지원 역시 개인의 시간의 구조화에 맞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안정적인 취업 연계

직업훈련을 받는 것은 직업훈련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을 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직업훈련 이후 취업으로의 연결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취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고용청? 노동청? 뭐 그런데 등록도 해냈고, 친구들한테 부탁도 해냈고, 학원에서도 연결해 주려고 하는데 나이가 있어서 잘 안 되네요. 요즘은 젊은 애들을 많이 구하죠. 나이들면 경력자를 구하거나. 아니면 개인샵을 차리는 건데... 지금은 워낙 갖춰진 게 없으니까. 피부관리에 필요한 화장품이라도 구입해 놓고 해야 되는데. 샵에 들어가서 하다가 프리랜서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중략) 날씨가 갈수록 촉박해져요. 여기저기 등록은 해냈는데 연락은 없죠.

다른데 알아봐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혹시나 내가 안 좋은 쪽으로 빠지면 어쩌나 그런 생각도 하고. 이혼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애가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노래방 도우미 있죠. 그걸 해요. 근데 그 친구는 애가 아직 어리니까 하지만, 우리 애는 좀 컸으니까 알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건 못하겠더라구요. (유리, 39세)

취직이 됐으면 굳이 다른 쉼터로 안 가도 되는데. 아직 취업이 안 됐으니까... 거기(인터뷰 당시 쉼터 이용 가능 기간이 거의 만료되어 퇴소 후 연계된 시설)에서 좀 더 취업에 관한 교육을 더 받고 이왕이면 자격증을 땄으니까 그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지금은 취업이 안 됐으니까 우선 거기 가고, 일자리가 생기면 나와서 살아야죠. (은미, 46세)

유리는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받았고, 은미는 가정폭력 상담원과 성폭력 상담원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유리는 현재까지 취업이 되지 않아 친정 집에서 거주하며 마트 판매직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은미는 쉼터 이용 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쉼터로 연계되었다. 만약 취업이 되었다면 다른 쉼터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직업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으로 연결하여 보다 완전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나 ‘가정폭력 쉼터 이용 여성’으로서 취업에 특혜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나이나 무경험·무경력 등의 이유로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4) 육아 지원 마련

현재 쉼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함께 피해 아동³⁾의 시설 이용을

3)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3의2.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지원하고 있다. 각 컴퓨터마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이나 성별에 대한 제한은 각기 다르며, 아동의 이용을 전면 제한하고 있는 곳도 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동의 경우 가정폭력 가해 남성에게 고지하지 않으면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밀 전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취학 전 아동이나 저학년의 경우 방과 후 시간에 아이를 돌봐주거나 공부를 더 봐줄 수 있는 지원은 미약하다. 특히 피해 여성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게 된 아동들의 경우 신체적 폭력을 직접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정환경으로 인해 정서불안, 애정결핍 등 심리·정서적 증상에서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적 증상까지 다양한 문제를 보이기 때문에 피해 여성은 아동들의 치료와 학업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나 아동들을 신경쓰다보면 자신의 치유와 경제적 자립에 집중할 수 없고, 아동들을 돌봐야 한다는 데 대한 스트레스로 더욱 힘들어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 중 유리는 초등학생 여아와 함께, 주영은 3살의 여아와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유리와 주영 모두 아동들의 심신 치료에 전념하다보니 취업교육을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교육의 개설 기간을 놓쳐 원하는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다.

실제로 하고 싶은 것은 웹디자인을 배우고 싶었지만 몸이 안 좋은 아가를 데리고 있으면서 시간에 제약이 있었고 장애인을 위한 차를 운전하여 봉사하고 싶은 맘에 일주일 만에 딸 수 있었던 운전면허를 딸 수 있었던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됐어요. (주영, 30세)

또한 자녀의 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맞추어 계획을 짜다보니 취업 역시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주영은 잠시 취업한 동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지만, 아이가 아플 때마다 일을 쉴 수가 없어 컴퓨터에 지내고 있는 다른 사

람에게 부탁하여야 했고, 이에 대해 ‘자녀를 두고 온 엄마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기는 것은 서로에게 힘든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아동과 동반하여 쉼터에 들어온 여성에게 육아지원, 특히 미취학 아동과 연소자에 대한 육아지원은 여성의 취업이나 직업훈련 등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2. ‘직업훈련’ 과 ‘취업’ 사이의 갈등요인

1) ‘직업훈련’ 선택의 어려움

(1) 자신의 욕구와 적성에 대한 혼란

한국 사회는 아직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뿌리 깊게 남아 있어 결혼 후 여성은 취업 보다 가사노동을 우선하게 된다. 또한 한국의 여성노동시장은 결혼, 임신, 출산을 기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낮아졌다가 다시 재취업률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뿐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인한 취업 중단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경우 신체적 폭력과 의치증 등으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했고, 취업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단기간으로 종료되거나 남편이나 가족들의 통제 속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위한 양질의 정보나 사회적 연결망도 부재한 상태에서, 이들에게 쉼터에서 생활하는 동안 취업이나 직업훈련에 대해 생각할 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갑작스럽고, 생소한 경험이 된다.

쉼터 이용 여성들이 당장 취업할 수 있는 곳은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근 거리에 위치한 식당이나 마트 판매직 등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이 전부이

기 때문에 우선 직업훈련보다 취업이 먼저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취업의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취업을 한다. 그러나 직업훈련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토대로 독립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중압감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것을 배워야 할지 무척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내가 지금 나이 50이 넘어서 뭐 배운다고 이게 빨리 빨리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건 못 하겠고, 음식, 출장부페나 할까... 아니면 분식집을 할까... 이혼 소송 끝나면 그 돈 갖고 내 가게나 차릴까하는데..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따라는데 그런데서 배우려면 뭐 또 새로 배워야 되잖아. 근데 내가 음식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운전면허나 하나 따 두면 내가 나중에 음식점 해도 재료 사러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운전면허나 따볼까... 이런 저런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이혼 생각하는 것도 복잡한데.. 그런 거 까지 생각을 못하겠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수 있을지 자신감도 없고... (미연, 54세)

나는 결혼 전에 계속 직장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가사노동 같은 거.. 집안 일 이런 건 잘 몰라. 반찬 같은 것도 못 만들고. 근데 여기 와서 두 달 만에 내가 좀 추스르고 뭔가 해봐야 겠다. 부딪쳐봐야 겠다. 큰 딸한테 부탁해서 일할 곳 좀 알아봐달라 그랬어. 내가 보면 다 식당일 밖에 없잖아.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건 내 적성도 아니고. 딸이 박스 포장하는 걸 알려줘서 그거 했는데 괜찮았는데 시급을 줄여서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 이틀인가 행사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전화로 리서치하는 거 그거 소개해줬는데 10일? 11일 하고 계속 못했지. 그 때 선거 때 지나고 시급도 줄이고 일하는 시간도 줄이니까 돈이 안 되더라구. 이제 그러고 나서 아 뭔가 배워야 겠다. 전문적인 걸 배워야 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선생님(쉼터 관리자)이 간병인 교육을 받아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구요. 허리도 안 좋고 한데 그거 따고 내가

취업이 될까. 취업이 되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아픈 사람들 돌보는 건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일단 수료하고 나면 취업은 바로 된다니까 하는데. 아직 자신도 없고. 내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경아, 52세)

선생님(컴터 관리자)께서 말씀하셔서 언니들(입소자들)하고 같이 간병인 교육 받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내 적성은 아닌 것 같고... (서진, 27세)

미연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으며, 경아와 서진에게 간병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서진은 교육을 신청하였다가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취소하였다. 한편, 제과제빵 학원을 다녔던 선아, 피부관리를 배운 유리 등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고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학원을 각자 알아보고 선택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학원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예들은 컴퓨터 이용 여성들의 다양하고도 복잡한 욕구를 제대로 충족해 주고 있지 못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의미한다.

처음에 제과제빵 하겠다 했을 때는 끝나고 나면 시장에서라도 노점상이라도... 빵 만들어서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막상 배우니까 그게 안 되겠더라구.. (중략) 장비같은 것도 학원 다닐 때는 학원 장비를 쓰지만, 노점상이라도 내 장비가 필요한데. 그 돈도 만만치 않고.. (선아, 37세)

피부관리 수료를 하긴 했는데 제가 좋아서 했는데, 이 일이 창업을 해도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라서.. 시작할 때는 그런 거 몰랐는데... 시작하고 보니까 취업이 쉽지 않더라구요. (유리, 39세)

제과제빵, 피부관리사 모두 여성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훈련일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욕구나 적성과도 부합하고, 교육이 끝난 후 취업 및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직업상담사 등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기 전 그 직업에 대한 시장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 부대비용 부족

가정폭력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간신히 몸만 피해 탈출해 온 여성들은 대부분 빈 손인 상태로 쉼터에 들어오게 된다. 간혹 지갑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고, 카드나 통장 등은 쉼터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 쉼터에서 벗어난 먼 지역에서나 거래가 가능하다. 따라서 쉼터를 이용 중인 많은 여성들이 금전적인 문제를 겪게 된다.

돈이 없으니까 매일 딸한테 가서 만원, 이만원, 좀 많으면 오만원 이렇게 받아서 쓰는데 핸드폰도 딸이 내주는데. 월 배우러 가기가 그렇지. 차라리 여기서 생활하는데 보조금 같은 게 조금씩 나오면 하다못해 이혼 서류 하려고 왔다갔다 하면 밖에서 아무 것도 안 사먹어도 교통비만 해도 만만치 않거든. 근데 뭐 배울 때도 다른 사람들 보면 자기들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 그러니까 다들 돈 벌까 직업훈련 받을까 막 이 생각 저 생각 정신없잖아. 다들 한 푼도 없이 오니까. 생활비 조금 보조 해주면 좋겠어. (미연, 54세)

미연은 쉼터라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05년 봄에 집에서 나와 혼자 월세방을 얻어 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다가 여성단체를 통해 2006년 3월경에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근 1년 동안 혼자 생활하면서 경제적 상황은 극도로 나빠

졌고, 컴퓨터에서 생활하면서도 딸이 주는 용돈으로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미연은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것은 시간적 제약 외에도 금전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연은 컴퓨터에서 거주하는 것 외에도 생활을 위한 보조금이 일부라도 지급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내가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운전면허는 났는데, 소송이니 뭐니 준비할 게 많잖아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차비만도 엄청 깨져요. 나가서 정말 배고픈 거 끝까지 참고, 물은 집에서 싸갖고 나가고, 그래도 모자라면 사먹고 그러면서 정말 최소한의 돈을 쓰는데 돈이 워낙 없으니까. 월 배우려고 해도 교통비도 없잖아. 운전면허 딸 때도 뭐 시험 접수 하니 뭐하니 그런 돈으로 학원에 낸 돈 만 십만원 정도 되는데.. 학원비도 내 주셨는데 그거 또 때때마다 그 돈 주세요 할 수도 없고... 지금 내 수중에 돈 만원이 없는데. 선생님(컴퓨터 관리자)은 자꾸 월 배워라 배워라 하시는데 나도 생각은 있지. 웨딩플래너 하고 싶으니까. 근데 먼저 돈을 조금 벌어서 하다가 나쁜 입고 온 옷이 다잖아. 근데 교육 나가려면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이제 또 계절도 바뀌니까... (연정, 35세)

일 자리를 알아봤는데. 학력문제가 있으니까...파트타임으로 일하더라도 차비라도 벌어야 되니까. 먹고 자고는 하지만.. 그 외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도 드니까. (선아, 37세)

보조금은 학원 25만원 두달, 화장품. 95만원.. 2만 8천원 책값까지 내주셨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다 해결이 안 되죠. 개인비용도... 석고팩 사고. 거기 다니면서 이런 저런 준비물 조금씩 사다보면... 거의 10만원 들어가죠. 교통비는 카드로 또 해주셨는데.. 교통비 말고도 10만원이 들었으니까 만만치 않

죠. 그래도 혜택을 많이 받았죠.. 혜원이(동반 아동) 후원금은 병원비라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병원비로만 썼고, 부족한 거는 친구랑 언니랑 빌렸죠.. 빌려서 썼죠. (유리, 39세)

직업훈련을 배우러 다니면서 필요한 식사비, 교통비 외에도 외출에 필요한 의복을 마련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며, 미연 외에도 연정, 선아, 유리 등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였고, 친구나 지인들의 돈을 빌리며 비용을 충당해야 했다고 한다. 이렇듯 쉼터를 이용하는 많은 여성들이 부대비용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쉽게 취업을 포기하고 직업훈련을 선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부대비용 역시 취업훈련의 항목 속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3) 취업 및 창업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직업훈련의 취지는 교육을 받은 후 전문 지식 혹은 전문 기술을 통해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직업훈련이 취업과 창업으로 직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는 현재의 지원이 직업훈련의 종료 이후 취업과 창업은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그치게 된다는 데 그 한계가 있다. 직업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취업 및 창업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서진은 직업훈련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하였다. 배우고 싶은 분야는 있다고 했지만 현재는 금전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 입소해서 왜 애들을 두고 나왔냐는 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빨리 자리 잡고 애들 데리고 나오고 싶어요. 지금 취직하면 제가 여기 들어온 지 석 달 됐으니까 석달 동안 벌면 다른 쉼터로 안 가고 방 한 칸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돈 좀 모이면 애들도 데리고 와야지요. 배우는 거는 나중에

내가 돈 벌어서 내 돈으로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배운다고 그게 취업이 되고, 창업이 되고... 다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그 일해서 돈 벌어놓고 내가 살 곳을 마련해야죠. (서진, 27세)

웨딩플래너를 생각하고는 있는데... (중략) 내가 그거를 한다고 해서 취직이 바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학원비용은 여기서 대주고 이런 거는 좋은데 내가 또 지원받아서 했는데 취업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취업이 안 되면 미안한 거잖아. 부담스럽지. 어떤 면에서... (연정, 35세)

연정은 서진과 달리 직업훈련을 선택하였지만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 현재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면서도 ‘차라리 진즉에 돈이나 벌 걸 잘못했다.’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전문성이 없어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들 모두 마트 직원으로 각각 계산원과 판매원으로 일하였다. 안정적인 취업은 아니지만 서진이나 연정은 27세, 35세로 젊은 나이에 속하며, ‘나이차별’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아직은 동종업계에서 차별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자신들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4,50대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업훈련 이후의 취업이나 창업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은 직업훈련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더 큰 요인이 된다. 54세의 미연은 ‘지금 와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힘들지만 배운다고 해서 또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하였다. 또한 간병인 교육을 받은 경아 역시 간병인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를 교육 수수료 후 취업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라고 꼽고 있다. 따라서 쉽터 이용 여성들이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은 후 취업 및 창업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지원센터, 여성창업지원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직업훈련이 취업 및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직업훈련이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취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취업' 선택의 어려움

(1) 신변 노출의 위험

컴퓨터의 역할 중 가정폭력 가해 남성으로부터 피해 여성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컴퓨터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든 여성들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 신변 보호를 위해 주소 및 연락처를 노출하지 않는다. 이는 컴퓨터 종사자의 의무이기도 하며,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들 역시 지켜야 할 수칙이다. 따라서 컴퓨터 이용 여성들은 직업훈련이나 취업을 함에 있어서도 자신이 지내고 있는 컴퓨터의 주소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직업훈련의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컴퓨터 종사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직업훈련 교육장의 종사자에게 현재 컴퓨터 이용 여성의 상황을 제한적으로 공개하여 주소 및 연락처가 없이도 학원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취업을 할 때에는 이력서에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이 필수요소이다. 그러나 컴퓨터 이용 여성들은 주소지가 불명확하고 연락처 역시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는 위치추적 문제로 인해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이력서 기재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컴퓨터 이용 여성 중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으로의 취업도 거절당한 경우가 있다. 또한 서진은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 위치한 빌딩의 주소를 이력서에 기재하여 직장 사람들의 화두에 오른 경험이라고 하였다.

마트에 취직하는데도 이력서 쓰는데 당장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소는 저기 사무실 빌딩으로 해놨더니. “빌딩에서 살아요?” 그러고 물어보더라구요. 핸드폰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잖아요. 요즘은 또 핸드폰 다들 있는데 핸드폰이 지금 없으니까 번호를 안 써놓으면 어떤 데서는 “요즘 시대에 핸드폰도 없어요?” 그러구. 핸드폰은 내 명의로 못하고 다른 친척이나 친구 명의로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지금 누구 명의 빌릴 사람도 없고, 첫 출근했더니. “꼭 출근하라고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대요.” 그러더라구요. (서진, 27세)

(웨딩플래너) 교육 받기 전에 내가 이걸 하면 취직할 수 있을까 알아본다고요 며칠 계속 알아보고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죄다 4대 보험 이렇게 써놔어. 거기서는 대우를 해준다 이런 건지 몰라도 우리는 입장이 4대 보험 딱 되면 남편이 바로 알 수 있다면서. 어쨌든 교육이 끝나도 그런 데서는 내가 일을 못하잖아. (연정, 35세)

운전면허증 따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일하게 됐는데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면 4대보험 뭐 그런 것 때문에 남편한테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이런 노출 위험이 있잖아요. 현재 장애인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고 싶지만 신분 노출 위험 때문에 이력서 내기가 두려워 제대로 된 직장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주영, 30세)

연정과 주영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문제로 취업의 어려움을 느낀 경우이다. 핸드폰 위치추적과 마찬가지로 4대 보험에 가입하면 가해 남성(남편)은 여성이 취직한 회사를 알 수 있게 되어 쉽터 이용 여성이 가해 남성(남편)에게 그 신변이 노출될 위험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노출의 위험으로 주영은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포기해야

했다. 연정은 현재 웨딩플래너 교육을 받고 있으면서도 웨딩플래너로 취업을 할 때 대부분 4대 보험이 가입되기 때문에 취업으로의 연계가 어렵다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2) 쉽터 내 프로그램 참여 및 생활 규칙 수행

쉽터 내에서는 개인 상담 및 법률 상담 외에도 미술치료, 성교육, 음악치료, 기체조 등 쉽터 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을 하면서부터는 시간을 유연성있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쉽터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게 된다. 우리는 쉽터 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짐을 느꼈다고 한다. 그만큼 쉽터 내 프로그램은 쉽터 이용 여성에게 심신의 안정과 회복을 돕는다. 서진은 또한 쉽터 내 프로그램을 통해 쉽터 ‘식구들’끼리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유대감을 갖게 된다고 보면서 이에 참여하는 것이 공동체 생활을 위해 관계를 다질 수 있게 되며 취업하면서 상담을 받지 못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아쉬워하였다.

(피부관리 교육) 일주일에 2번을 했는데. 화요일 목요일.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날로 잡은 거죠. 프로그램을 또 열심히 받아야 되니까. 나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남이 아닌 나를 한번 더 생각하면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 게 기였던 것 같아요. (유리, 39세)

취업해서 나가면 하루 종일 일하는 거니까. 상담같은 거는 계속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일요일만 쉬는데 일요일에는 상담이 없으니까 그런 게 좀 아쉽죠. (서진, 27세)

프로그램의 불참이라는 문제 외에도 쉽터 내에서는 이용 여성들 간에 생

활 규칙에 따라 식사당번을 정하고 청소나 빨래 등 가사를 분담하여 하게 된다. 취업을 하다보면 가사 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이용 여성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게 되기도 하며, 쉽터마다 내규가 다르기는 하지만 귀가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식당 일이나 마트 일 등 늦게 종료되는 일은 취업에 곤란을 겪기도 한다.

(3) 장기적 차원에서 기술 부재의 문제

대부분의 쉽터 이용 여성들은 가정폭력의 상황에서 긴박하게 탈출하여 쉽터까지 오게 된다. 따라서 빈 손으로 쉽터에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로 인해 쉽터에 있는 동안 당장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하려고 하지만, 이혼이나 별거, 독립을 생각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취업보다는 직업훈련을 통해 미래 설계를 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특별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는 이상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쉽터에서 퇴소한 이후에 보다 안정된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뻘하잖아 내가 지금 식당 들어가면 평생 식당에서만 돈다는 애긴데. 그래도 아직 서른 다섯인데... 평생 그렇게 돌면서 사는 것 보다 원가 배워서 제대로 출퇴근하고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연정, 35세)

35세의 연정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 나이제한에 걸리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학력이 전문대 중퇴이고 전문기술이 없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식당 및 기타 서비스 직종으로 제한되게 된다. 연정은 쉽터를 이용하기 전에도 친척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중심으로 일한 적이 있으며, 그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현재 자신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식당밖

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당장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이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것을 토대로 취업을 하는 것이 이혼 후 자녀 양육권 등을 고려할 때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3) 소결

컴터를 이용 중인 여성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취업을 하기도 하고, 직업훈련을 받기도 한다. 취업의 장점은 컴터 이용 기간의 만료 이후 월세방이라도 구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생기기 때문에 컴터에서 지원되는 물품 외에 생활용품 및 의류 등 부족한 부분을 자비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컴터에서 생활하는 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는 회사나 주소지, 연락처가 분명해야 하는 직장에는 취업하기 어려우며, 본인 스스로 안전이 확보되는 직장을 선별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은 매우 축소된다. 또한 장시간·장기간 근무는 컴터 내 프로그램에 불참하게 되어 자신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더디게 하며, 컴터라는 공동체 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전문 기술을 교육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이 지불해야 할 부대비용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며 직업훈련 수수료 이후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결되는 일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경우에 따라 취업과 직업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사냥하기도 한다. 은미, 경아, 주영 등은 일주일, 한 달 등 단기간 취업 후 단기간에 종료되는 직업훈련을 받았으며, 지연은 일주일 중 직업교육을 받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이용하여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직업교육도 받으면서 취업을 하여 컴터 생활이나 프로그램 참여 등에 문제가 적으며, 또한 직업

훈련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스스로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나 어느 하나에 집중하기 어렵게 되며, 취업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3. 쉼터 퇴소 후 지원

1) 퇴소 후 직업훈련의 보충적 지원

현재 쉼터를 이용 중인 여성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복권기금을 통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쉼터를 퇴소한 이후 독립한 여성에게는 직업훈련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다. 독립하였으나 개인적인 문제로 일찍 퇴소를 한 성희의 경우, 제과제빵 교육 훈련 중 이용 기간이 만료 되어 1차 수강으로 종료된 경아의 경우, 아픈 아이 때문에 원하는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던 주영의 경우 등 직업훈련의 보충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히 성희는 금전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면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쉼터의 특성 때문에 힘들어했고 이로 인해 퇴소를 선택하였지만 퇴소한 이후 생활이 더 어려워지면서 심리 상담,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뭐든지 금전문제니까 나가서 일을 해도 금전문제고.. 돈 없이 나왔기 때문에 금전문제가... 금전적인 면이 제일 많이 좌우하죠. 그리고 애들이 어떻게 잘 될까.

(퇴소 후에) 일을 하다가 아직도 월급도 못 받았어. 호프집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도 못 받았어. 장사가 안 된다고 월급을 안 주는 거야. 사장이 전화 안 받고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구. 전화는 받는데 안 주더라구. 몰라.. 어떻게 될 대로 되겠지 그러고 지금은 쉬고 있어. (성희, 46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는 생활보호수급대상자나 장애인 등의 직업훈련을 보조하고 있다.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에서는 직업훈련의 우선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그 중 모부자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들의 직업교육훈련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⁵⁾ 그러나 쉼터 이용 여성은 모부자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⁶⁾의 구성요건과는 또 다른 점이 있다.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여성들이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 모두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것도 아니며, 쉼터를 아동과 함께 이용하지 못한 여성들도 있으며, 퇴소 이후에도 자녀와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 직업훈련을 보충하여 받기는 어렵다. 그러나 쉼터를 퇴소한 이후에도 직업훈련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이 조항을 확대 적용하여 직업훈련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0조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우선적으로 받게 하여야 한다.

5)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10조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우선 선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인 경우에는 교육기본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8.21, 1999.2.5, 2001.1.29, 2001.7.7>

4.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6) 모부자복지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24>

1.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 입소기간의 연장

단기 쉼터의 이용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기간 만료로 인해 강제 퇴소하게 되며, 상담원과의 상담 이후 거취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만 하여 다른 쉼터로 연계해 주고 있으며, 2006년 법 개정 이후 중장기 시설로의 연계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6개월의 기간 만료 이후 무조건 중장기 시설로 연계하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쉼터 이용 기간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엄마가 아프니까 내려가고 싶은데 못 내려가. 이혼 소송 중이라고 안 찾아오고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집에 와서 행패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다른 쉼터로 가야지. 여기서 더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 지금은... (미연, 54세)

갈 때가 되면 가는 건데 지금 당장 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쉼터로 가야지. 있던 곳에서 있던 사람들하고 있으면 소송 하는 것도 마음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럴텐데.. 나는 내가 혼자 산다. 밤에 혼자 잔다 이런 거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위축이 돼. 그건 못 할 것 같애. 마음이 아직 불안하고 의존적인 게 있어서 혼자서 못 살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같이 살 수 있는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어디서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서 기간되면 다른 쉼터로 알아봐야죠. (경아, 52세)

미연과 경아는 쉼터를 이용하는 동안 이혼 소송을 시작하였다. 보통 1심 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예상하지만 소송이 시작된 상태에서 쉼터에 들어오지 않는 한, 쉼터 이용 기간인 6개월을 넘게 되며, 소송이 지연되기도 하여 6개월을 초과하기 십상이다. 소송이 지연될수록 소송 당사자인 쉼터 이용 여성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소송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기도 하며, 시간이 되면 지낼 곳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환경 적응해야 한다는 막연한 두려움이기도 하다. 미연은 친정 집에 갈 수도 있으며, 경아는 자신의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심리적인 안정과 신변 보호 등 안전의 문제로 쉼터에 기거하기를 원한다. 또한 새로운 시설에서 다시 적응하는 것보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한 쉼터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만약 이혼을 한다고 해도 무료법률 한다고 해도 1, 2년 걸린다고 하니 진짜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도 기간이 될 수 있는 거구요. 이제 자기가 그곳에 있으면서 저같이 직업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취업하고 그걸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생활하면서 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정도는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증금정도라도 마련할 수 있는 정도... (유리, 39세)

유리 역시 쉼터 이용 기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혼 소송 중인 경우 소송이 종료될 때,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취업을 하고 월세방을 구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3) 거취문제 해결 및 안전의 확보

쉼터는 가해 남성으로부터 피해 여성을 보호하여 일정 기간 기거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그러나 기간이 만료된 이후 귀가하지 않는 여성은 거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타 시설로의 연계를 해주지만 거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시설에서 만큼의 신변 보호나 안전 문제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선아는 쉼터에서 생활한 6개월 동안 상담과 병원치료, 직업훈련 등의 지

원이 좋았지만 다른 쉼터를 이용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하였다. 계속 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보다 혼자 살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자신의 힘으로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쉼터에서 퇴소한 이후 독립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가해 남성의 존재는 큰 위협이 된다. 실제로 선아는 2003년 합의이혼한 바 있으나 남편이 합의 내용과 달리 집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로 선아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은 선아로 하여금 불안과 긴장의 상태에 놓이게 한다.

2003년에. 이혼을 했어요. 합의로.

이혼을 하자. 서로 이럴 필요가 없다. 싫으면 안 보고 사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혼을 했지. 나한테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 자식도 보낼 수 없다 그러더라구. 그래 줄 것도 없었을 뿐 더러 나도 받을 거 없다. 아이도 보낼 수 없으면 키워라. 그래서 이혼해준대.. 법원에 가서 이혼신청을 하고 이혼을 했어. 애들을 데리고 나가겠다 그랬었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안 나가는 거야. 다시 들어와요.

때리지만 않고, 의심만 안 하면 살면 살지 왜 못 살겠냐.. 금전적인 면에서는.. 원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2년 반을 이혼한 뒤에도 계속 같이 살게 된 거야.

처음에 이혼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정도는 안 때렸던 거 같은데.. 얼마 못가. 얼마 못가고 또 그래. 계속 그렇게 의심을 하고..

나오기 전에는 한 달 내내 맞았어. 밤낮으로 죽을 것 같더라구요. 밤에는 애들 잘 때. 낮에는 애들 놀러 나가라 그러고. 한 달 내내 맞는데. 도망도 못가게 옷을 벗겨놓고 그래. 나오는 날 그랬는데 일요일이었는데 그 때 맞아서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누가 알겠어. 일단 죽을 것 같아서 나와 갖고 쉼터에 왔는데..

(기간 만료 후 타 쉼터로 가지 않은 것은) 쉼터가 해답은 아닌 것 같더라구요. 쉼터에서 도움 받은 게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한다면 빨

리 나와서 정착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더 잘한 거 같아요.
(선아, 37세)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던 여성들은 가해 남성에 대한 공포심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한다. 미연, 주영, 유리, 연정 등은 가해 남성이 자신을 찾아서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퇴소 후 거취 문제는 단지 주거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 남성으로부터 안전이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주영은 입원한 동생을 돌보고 이후 동생네 집에서 생활할 계획으로 퇴소하였으나 퇴소한 뒤 가해 남성이 찾아와 친정 식구들에게 해코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다. 미연 역시 쉼터 기간 만료 이후 친정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나 가해 남성이 친정 식구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생각에 다른 쉼터로 연계를 받았다. 유리나 연정도 거취 문제가 해결되어도 가해 남성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호소한다.

엄마가 몸이 안 좋으니까 엄마 병 간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놈이 와서 개판칠까봐... (미연, 54세)

저의 여동생 병간 하러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남편이 찾아와 저희 친정 가족에게 행패를 부릴지도 모르니까요... (주영, 30세)

만약 방을 얻어 나가 있더라도 남편이 찾아올까봐 불안심리가 해결이 안 되고.. 폭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해결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유리, 39세)

이혼하고서도 일하면서 어떤 남자를 만나든 간에 그런 걸로 또 간섭할까봐.

여자들은 안 그러지만 남자들은 혹시 모르는 거거든. 자영 언니(가명, 퇴소한 다른 이용 여성으로 남편이 처음에는 합의이혼에 대한 의사를 밝혀 퇴소한 후 합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막상 퇴소한 후 다시 연락하자 합의를 거부하며 현재 이용 여성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도 처분할 수 없도록 해 놓음.) 같은 경우가 딱 그 케이스잖아요. 이 사람도 안 그러지 말라는, 안 그럴 놈이 아니거든요. 이 놈도... 전에 한 번 그랬거든. 나 외에 딴 남자 만나면 이혼한다 그랬거든. 내가 농담으로 당신 사랑하는 여자 생기면 말하라고 내가 쿨하게 헤어져 준다고 그랬거든. 저는 아니래. 네가 누굴 만나면 너랑 그 놈이랑 다 죽여 버릴 거래. 그런 게 여태까지 행동이랑 이런 게 다 섞여서 무서운 거야.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고..충분히 그러고 남을 놓이다 싶고...

(중략) 나는 여기서 또 다른 쉼터로 갈 생각은 없어. 웬만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도 어떻게 월세 얻을 수 있는 돈이라도 벌어서 여기서 기간되면 나가고 싶은데 그게 행동이 자유로우니까 근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 (연정, 35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이 신고된 경우,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경우 등 가정폭력 가해 남성에 대해 피해 여성으로의 접근금지 명령 등의 법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으나 이것이 잘 이행되고 있지는 않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규제 역시 쉼터 이용 여성들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운데, 이는 가정폭력 상황에서 가해 남성 몰래 피신해 온 경우가 많고, 쉼터 자체가 드러나 있지 않으며, 쉼터 이용 여성들 스스로도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현재 체계의 접근금지 명령 등은 적용의 한계가 있다.

4대보험 가입이나 카드 결제, 휴대전화 사용 등은 가정폭력 가해 남성(남편)에게 쉼터 이용 여성이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다. 따라서 4대보

힘이 가입되지 않는 일자리를 찾고, 카드 사용 및 휴대 전화 사용에도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카드 사용의 경우 컴퓨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 휴대 전화의 경우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룹에도 항상 신변 노출에 대한 불안은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컴퓨터 이용 여성들은 건강보험의 경우 임의의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되어 의료급여증을 받게 된다. 이는 노숙자, 부랑자 등의 지원을 위한 정책을 컴퓨터 이용 여성에게도 준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을 차용하여 휴대전화 사용이나 4대보험 가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확대하는 것도 컴퓨터 이용 여성들의 안전 확보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사회복귀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

가정폭력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훼손을 가져오며, 심리적·정신적 증상은 그 도를 쉽게 가늠할 수도 없으며 치료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회복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다가도 폭력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시 불안을 일으키기도 한다.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한 컴퓨터 이용 여성들은 취업을 하고, 직업훈련을 받는 등 사회진출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낮은 자존감으로 이젠 자신의 일을 찾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불안, 무기력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특히 선아는 일을 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게 될 경우 도리어 자신이 상처받게 되었던 경험을 토로하였다. 아직 사회문화적 분위기는 폭력의 원인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한 자녀를 두고 온 경우 무책임한 여성으로 낙인까지 찍히게 되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무기력한 것도 있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힘든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해줄까봐 내가 아예 말을 달아버려요. 상담해주신 선생님이나 선생님(연구자)같은 경우는 자꾸 힘이 되는 말, 힘이 나는 말을 해주시고,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안 하게 되는데, 그게 사회 생활하는데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퇴소했어도 선생님하고 상담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아, 37세)

내가 쉼터에서 마냥 있다가는 애들 다 망가뜨리겠다 싶어서 나온 거야 생각 생각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쉼터에서 애들 보러 왔다갔다 한다는 것도 그렇고, 남들 눈에 띄면 좀 그렇고, 내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내가 나가서 애들 보면서 돌봐줘야 겠다 생각하고 나왔지. 나오니까 일하는데 뭐 손도 잘 안 잡히고. 나와 보니까 갑갑한 게 더 많아. 내가 지금 언니랑 살면서도 집에 안 들어가는 날이 더 많아. 들어가는 날 보다...

(중략) 퇴소한 다음에도 심리 상담 뭐 이런 것도 계속하면 좋지. 근데 지금은 시스템이 그게 안 되잖아. 그냥 안 되는 건가보다 그러고 아예 말 안하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쉼터에서)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건 아니잖아. 계속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안 되나보다 하고 마는 거지. (성희, 46세)

퇴소한 사람들한테도 심리 상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마음이 불안 하니까... (주영, 30세)

정신치료도 필요해요. 심리상담도 필요하고. 아무래도 자존감이 낮으니까 상담도 계속 받을 수 있게 지원됐으면 좋겠어요. (은미, 46세)

성희는 심리적·정서적 증상을 직업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주거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집이 아닌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일이 더 많을 만

큼 아직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퇴소한 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없지만 퇴소한 여성들에게도 상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주영은 남편이 자신을 언제 찾아와 난동을 부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해 있다면서 가능한 퇴소 후에도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은미는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심리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V. 결론 및 요약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6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를 넘어섰지만 결혼 및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취업단절과 이후의 재취업은 한국 여성노동시장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여성의 재취업이 단순노무직, 서비스직에 집중되며, 이들 직종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은 여성 노동의 불안정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여성노동시장의 특징은 가정폭력 쉼터 이용 여성들의 취업경험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가정폭력의 피해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이러한 시장적 특성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은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2006년 4월 개정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중장기 쉼터 시설을 법제화하였지만, 아직 그 체계가 잡히지 않았고 시설 역시 부족하다. 단기 쉼터에서는 정서적 안정, 법률 상담 외에도 직업 훈련, 취업알선 등 경제적 자립에 대한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단기 쉼터의 경우 6개월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쉼터 이용 여성들은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해야 하며 쉼터 기간 만료 후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 마련까지 해야 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라는 긴급 상황에서 탈출해 온 쉼터 이용 여성들은 당장 교통비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쉽게 직업훈련을 선택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취업을 함에 있어서도 4대보험에 가입이 되는 곳은 신변 노출의 위험으로 취업을 할 수 없으며, 주소지, 연락처 등 신원확인 필수적인 곳 역시 이력서 내용의 불충분 등으로 취업이 좌절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전문적 기술의 유무, 학력의 고저, 연령을 떠나 취업이 용이한 단순노무직, 서비스

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컴퓨터를 이용하며 독립을 생각하고 있는 여성들은 취업을 하고자 하지만, 그 동안 안정된 직업·직장이 없었던 여성들이 대다수이며, 이들은 학력, 나이와 무관하게 식당, 마트 등 단순노무직, 서비스직으로 취업하게 된다. 이러한 직종은 컴퓨터와 가까운 곳에서 취업할 수도 있고 일을 찾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취업에는 용이하지만, 직업의 안정성이 낮고, 대표적인 저임금 직종들로 퇴소 후 자녀양육까지 고려하고 있는 여성들의 거취 마련과 생활의 안정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오랜 기간 지속된 가정폭력은 신체적 외상 외에도 만성 두통, 소화장애 등 장기간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신체적 증상과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의 심리·정신적 증상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인간관계 형성의 기술 부족 등을 회복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소요되어야 한다. 반면, 생활에 대한 강한 욕구와 컴퓨터 이용 후 자신의 거취 마련에 대한 고민 등은 컴퓨터 이용 여성들로 하여금 성급히 취업을 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컴퓨터라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며 미래 설계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컴퓨터에서 퇴소한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여 안정적인 취업 및 창업으로 연계되는 것이 이상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자의 특성이나 가정폭력이라는 상황에 따라 취업의 경험이 없거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거나 이미 오랫동안 노동시장에서 떨어져 있던 여성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가정폭력의 피해로 인해 심신의 문제를 안고 있는 컴퓨터 이용 여성들의 경우 무기력과 낮은 자존감 등을 회복하는 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자신의 적성과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폭력 쉼터 이용 여성들이 직업훈련 및 취업을 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한국 여성노동시장의 특징이 어떻게 재현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이들이 보다 안정된 취업을 하고 생활의 기쁨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취업 및 거취문제 해결 등 쉼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보충되어야 할 지원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상담사 등 전문가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쉼터 이용 여성들의 무기력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쉼터에서는 심리 상담과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자신이 배워야 할 직업훈련이나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나 안내는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자 해도 자신의 적성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미래성이 있는 일인지 등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식 없이 직업훈련을 받게 되어 직업훈련을 이미 시작한 상태에서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음을 호소하거나 수료 이후 취업 및 창업 등이 쉽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느끼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앞으로 미래성이 있는 일과 자신에게 맞는 일을 선택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직업훈련을 받거나 취업을 하려는 쉼터 이용 여성들에게 육아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학교는 비밀전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취학 전 아동의 지원은 전무하며, 취학 아동의 경우도 하교 이후의 시간은 쉼터에서 보내게 된다. 쉼터 아동과 함께 온 여성들은 아동의 일정에 맞춰 자신의 일정을 계획하기 때문에 취업 및 직업훈련이 더욱 어렵다. 따라서 쉼터 내에서도 아이들을 돌보거나 아동들의 교육을 맡거나 아동의 엄마 대신 아동과 병원에 동행해 주는 등의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시설이 넉넉하지 않은 인력과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쉼터 내에서 이 업무

를 수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또한 쉽터마다 내규가 달라 아동을 받지 않는 곳도 있으며, 항상 아동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육아 문제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직업훈련을 위한 부대비용의 보조가 고려되어야 한다. 직업훈련을 쉽사리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당장 용통 가능한 금전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밖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교통비조차 없고, 외출복 한 벌 없는 상황에서 직업훈련 비용을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여 선뜻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교통비, 식사비 등 부대비용의 해결이 시급한 쉽터 이용 여성들을 위해서는 기타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쉽터 이용 여성의 다양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직업훈련은 안정된 취업 및 창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현재 직업훈련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하더라도 직업훈련의 수수료 및 자격증 취득이 취업 및 창업으로 직결되지 않아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이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이다. 이는 직업훈련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직업훈련을 받은 당사자와 쉽터를 이용하는 다른 여성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심어줄 수 있다. 한편, 쉽터 이용 여성들은 직업훈련이 종결된 뒤 취업을 하고자 하여도 사회적인 '나이차별'과 '무경력·무경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창업의 경우 그 지원이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창업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 등에서는 이러한 쉽터 이용 여성들의 가정폭력으로부터의 탈출, 피신, 동반 아동, 신체적·심리적 건강, 연령, 무경력·무경험 등 복합적인 상황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지원에 힘써야 한다.

다섯째, 쉽터에서 퇴소한 여성에게도 직업훈련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쉽터 이용 여성들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기 퇴소하여 직업훈련의 기회

를 갖지 못하거나 쉼터 이용 기간의 만료로 인해 직업훈련 과정을 종결하지 못하고 퇴소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쉼터에서 퇴소한 여성들이 모두 귀가하는 것은 아니며 독립하여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도 한다. 그러나 퇴소하게 되면 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직업훈련 역시 무상으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쉼터에서 퇴소한 여성이라 하더라도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모자부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여성들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직업훈련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쉼터 이용 여성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취업 시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가정폭력 피해 남성(남편)에게 피해 여성인 쉼터 이용 여성의 현재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쉼터 이용 여성들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병원을 이용할 경우 신변 노출의 위험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의의 번호를 생성하여 본인의 원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새로 만들어진 번호를 통해 의료급여증을 발급받게 된다. 따라서 의료급여증 발급의 방식을 차용하여 쉼터에 있는 기간 내지는 퇴소 후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임의의 번호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단기 쉼터 이용 기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쉼터 이용 여성의 경제적 자립 문제는 단순히 취업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쉼터에서 퇴소한 이 후 주거지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포괄하여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혼을 하는 중이거나 직업훈련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학교 문제로 인해 아동의 학업이 단절 될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단기 쉼터 이용 기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컴퓨터 이용 여성의 거취문제 해결은 신변보호, 즉 안전한 생활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가정폭력의 경우 이혼 후에도 폭력이 멈추지 않고 피해 여성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경우가 보고 되고 있으며, 실제 가정폭력을 경험한 컴퓨터 이용 여성들은 가해 남성이 언제, 어떻게 자신을 찾아내어 해코지 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 가해 남성에게 대한 임시조치로 접근금지 명령이나 퇴거 격리 등이 법제화되어 있지만 이를 위반할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사실 상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가해 남성에게 대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 및 제재는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컴퓨터를 퇴소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심리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무기력, 우울 등을 호소하기도 하며, 이러한 증상은 단기간에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 또한 가정폭력의 원인이 ‘여성(아내)’에게도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스스로의 심리적·정서적 증상을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심리 상담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단행본

- 강이수·신경아(2001). 『여성과 일』. 동녘출판사.
- 곽삼근 외(2005). 『여성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김미경 외(2004). 『일과가족사의-고학력 여성의 선택과 한계』. 조은글터.
- 김양희(2003).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방안』. 집문당.
- 김종서 외(2000). 『평생교육개론』. 교육과학사.
- 김준영(2003). 『한국의 여성노동경제』. 해남.
- 나탈리 소콜로프(1996). 『여성노동시장이론』. 이효재 역.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손승영(1999). 『여성의 일과 삶의 질』. 생각의 나무.
- 신경아(1999). 「현대사회와 여성의 일」. 『새 여성학 강의』. 동녘.
- 장지연(1990). 「한국 사회 직업의 성별 분절화와 경제적 불평등」,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의 여성과 가족』. 문학과 지성사.
- 정영금(2003). 『여성의 일과 삶』. 시그마프레스.
- 캐롤린 모저(2000). 『여성정책의 이론과 실천』. 장미경 외 역. 문원출판.
- 테레사 쿨라빅 외(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한국여성연구회 역. 새물결.
- 하이디 하트만(1985). 「자본주의, 가부장제, 성별분업」, 『제3세계 여성노동』. 여성평우회 편. 창작과비평.
- 한국여성정책연구회(2002). 『한국의 여성정책』. 지식마당.

* 연구논문

- 고혜원(2003).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평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고혜원(2004).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부.
- 금재호(2002).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금재호·김주섭·장지연·조준모(2001).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근로여성
중기 정책 방향 및 목표 설정』. 한국노동연구원.
- 김경천(2002).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실태조사 보고서-정보화 강좌를 중심
으로』. 국회의원 김경천 정책자료집.
- 김기홍·김미숙(2006). 『중고령층 전직지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한
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미숙 외(2001). 『지식기반사회의 여성 직업교육훈련 발전 방안』.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김성경(1998). 『여성회관의 발전적 운영방안 : 운영 현황 및 과제』. 한국
여성개발원.
- 김순원(2001). 『여성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 방안』. 한국산업인력공단.
- 김종숙·박수미(2003). 『한국 여성의 노동이동』.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홍(2000).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홍(2005). 『최근 우리나라 부문별 여성인력 활용 현황 및 문제점』.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홍·김노마(1999). 『여성 직업훈련체제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
개발원.
- 김태홍·김미경(2002).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홍·김종숙(2002). 『여성 청년층 집단의 취업이행과 정책과제』. 한국여
성개발원.
- 김태홍·김종숙(2003).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홍·김종숙·장미혜·김난주(2003).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홍·문유경(1999). 『여성실업의 현황과 대처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홍·민무숙 외(2001).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 여성부.
- 김태홍·민무숙·양인숙(2002). 『지역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추진전략』. 한국여성개발원.
- 나영선(1997). 『여성 및 취약계층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나영선(1998). 『여성직업훈련현황과 취업 유망직종의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나영선·고혜원·주인중·김태홍(1999). 『여성을 위한 효율적 직업훈련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나영선·이수경(2000). 『여성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교육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나영선·고혜원(2002). 『여성 직업교육훈련 및 사회교육기관의 실태 분석과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 경기도.
- 남상균·장재호(2003). 『여성 직종 노동시장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 민무숙(2003). 『여성인적자원개발 협력망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여성부.
- 박성정(2005). 『중장년층 여성인적자원개발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박성정·김종숙·김성경(2005).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발전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박영란 외(2003). 『여성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손유미·김철희(2003). 『중고령층의 직업능력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어수봉(1991).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이선주(200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기능강화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이태진(2005). 『특수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방안 연구-여성폭력피해자를 중심으로』. 건설교통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강식·정진화(1997). 『여성 잠재인력의 활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최운실 외(1992).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정무장관(제2).

최선화(1997). 『여성과 빈곤』. 빈곤문제와 사회발전.

최희경(2004). 『부산지역 빈곤여성노인의 현황 및 생애사 분석과 정책 제안』. 부산발전연구원여성정책연구센터.

황수경(2003). 『여성의 직업선택과 고용구조』. 한국노동연구원.

* 석·박사 학위 논문

김명숙(2005). 『가사서비스종사자의 고용안정화를 통한 복지증진방안-부산 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김승연(2004).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석사논문.

김희선(1995). 『여성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박수미(2002). 『한국여성의 생애과정과 경제활동-노동시장 진입·퇴장에 관

한 종단적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박순향(2004).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가정복귀 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소재 1개 상담소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박희숙(2002). 『여성폭력쉼터 이용자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백정림(2004).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훈련수료생의 취업강화방안』.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송영희(2002). 『여성인력개발과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이승민(2005).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논문.

이정립(2003). 『비정규직 증대와 성별직종분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전석한(2000). 『여성쉼터 이용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교육 방안』.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한우섭(2000). 『여성 직업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학술지, 학회지, 정기간행물.

강승복(2005).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 『노동리뷰』 제12호.

김교성(2005). 「실업자의 재취업형태에 관한 연구 : 사건사 분석」, 『제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김태홍(2005). 「여성인적자원개발 추진전략」, 『여성정책포럼』 제9호 여름

호. 한국여성개발원.

- 박수미(2002). 「한국여성들의 첫 취업 진입, 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사회학』 제36집 2호.
- 박수미(2003). 「한국여성들의 두 번째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여성학』 제19권 1호.
- 박성정(2005). 「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현황과 과제」, 『여성정책포럼』 제9호 여름호. 한국여성개발원.
- 박영란(2004). 「여성의 전화 쉼터 운영현황 분석과 대안적 쉼터 모델 연구」, 『대안적 쉼터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표문.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 신현옥(2005). 「정부의 여성인력자원 개발 정책」, 『여성정책포럼』 제9호 여름호. 한국여성개발원.
- 양인숙(2005). 「여성전문인력의 창업활성화 방안」, 『여성정책포럼』 제9호 여름호. 한국여성개발원.
- 양인숙·장미혜·김난주(2004). 「21세기 성장산업에서의 여성창업 활성화 방안」, 『여성정책포럼』 제7호 겨울호. 한국여성개발원.
- 오은진(2005).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여성정책포럼』 제11호 겨울호. 한국여성개발원.
- 이현송(1996). 「가족의 생애주기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한국사회학』 제30집 겨울호. 한국사회학회.
- 장지연(2001a). 「고학력여성 경제활동의 국제비교」, 『한국여성학회 2001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여성학회.
- 장지연(2001b).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쟁점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게재 논문.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 장지연(2001d). 「여성 미취업자의 취업의사와 실업탈출과정」, 『한국사회

학』 제35집 4호. 한국사회학회.

장지연(2001d).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실태와 보호방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모색 토론회』 발표문.
www.kli.re.kr

정성미(2005).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특징」, 『노동리뷰』 제12호.

윤택립(2002), 「질적 연구 방법과 젠더 : 여성주의 문화기술지의 정립을 향하여」, 『한국여성학회』 제18권 2호.

인정숙(2005). 「정책동향: 여성가족부의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 『직업과 인력개발』. 제8권 4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여성학회(2002). 「제2분과 : 지구화와 여성노동」, 『한국여성학회 2002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여성개발원·한국노동연구원(2001). 『21세기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4). 『여성인적자원개발 혁신방안 연구 정책포럼』 자료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황정임(2005). 「양극화시대의 여성빈곤대응전략」, 『여성정책포럼』 제11호 겨울호. 한국여성개발원.

* 신문기사

연합뉴스. 「여성경력단절방지취업촉진법 제정해야」. 김정선 기자. 2004. 12. 21일 자.

연합뉴스. 「기혼 여성 구직자 증가 68.6%가 비정규직」. 김인철 기자. 2004. 11. 17일 자.

연합뉴스. 「재취업 주부 75% '경력 못살려」. 이정진 기자. 2006. 1. 13일 자.

우먼타임즈. 「“여성=서비스직” 고질병이 비정규직 키운다」. 장정화 기자.
2006. 3. 31일자.

* 참고 사이트

노동부 <http://www.molab.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ttp://www.krivet.re.kr/>

2. 외국문헌

Alice. A. Kemp(1994). 『*Women's Work : Degraded and Devalued*』 .
Prentice hall, New Jersey.

Martha Chen(at al)(2005). 『*Progress of the World's Women 2005:
Women, Work & Poverty*』 . UNIFEM.

Robert M Blackburn, Jennifer Jarman(2005). 『*Stratification and
Gender*』 . GeNet Working Paper No. 4.

Sandra Harding(2004). 「Rethinking Standpoint Epistemology: What is
“Strong Objectivity”?» , 『*Feminist Perspectives on
Social Research*』 .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Sharlene Nagy Hesse-Biber(2004). 「Feminist Approaches to
Research as a Process: Reconceptualizing
Epistemology, Methodology, and Method」 , 『*Feminist
Perspectives on Social Research*』 .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ABSTRACT

A Study on the Self-reliance and Employment Experience of Women Using a Domestic Violence Shelter

Lee, Joo Yeon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 have started this study by meeting women, who are using the domestic violence shelter, which face unemployment and housing, and acknowledges the difficulties of self-reliance.

These women after leaving the domestic violence shelter, due to domestic violence, some go back home, some decide to go through divorce, some file suits or go through agreements. And the others, regardless of divorce, get independent. They strive to get away with violent; however, in order to become self-reliant one must get a job to earn a decent income. In addition, they need a place to live where one can carry on her life, and economic independent must be accomplished.

Up to now, there has been numerous papers raising question about the domestic violence shelter's self-reliance support, but they all remained to

point out the lack of support for domestic violence shelter.

In this study, I will point out that the problem of these women are not just simply lack of support, rather that the feature of women's labor market should be seen together.

Therefore, through an 1:1 interview of nine people who had once or more used the shelter or who are still using the shelter, I want to see their employment experience and job training, and I want to point out the factors of choosing a job, and obstructions. For the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it discusses about the lack of human capital of women and the need to develop human capital. And by viewing the feature of Korean women's labor market and domestic violence shelter that are the problems of (re-)employment, I will provide shifts in policy.

Each chapter consists of these context, In chapter II, it discusses about the overall feature of Korean women's labor market, where they face extinction of employment and re-entry problem due to marriage, delivery, childcare, and wage difference based on different gender, women's part-time work, due to occupation division based on gender. This paper reorganized the existing papers and newspaper articles, and analyzed women, who are using the domestic violence shelter, in the aspect of socio-population and the symptoms of domestic violence. Also, I analyzed the existing papers about the self-reliance of women using the shelter.

The chapter III analyzed the employment experience of 9 interviewees. Under the name of "women", they were not able to receive proper education as they wanted, and they had to give up their work through life course such as marriage or childcare. Especially the physical symptoms,

physiological and emotional symptoms and social isolation due to violence made the shelter users even harder to become independent. Because of the life course of women and the Domestic violence, their employment experience that was provided is fragmentary and dependent.

In chapter IV, it points out the problem of job training program and employment, that is supported by the domestic violence shelter, and also provides solution. Women who are escaping domestic violence cannot select a proper job training, because the economic problem cannot be solved easily. Regardless of education and age, women who have no specialties have limited choice in choosing a job, and have participated in the simple labor work or service area like restaurants and markets. Also, after leaving the shelter, they need to provide their own shelter to live, and it is necessary to assure one's comfort, and to avoid the injurer. Therefore, to make self-reliance consolidate, there needs to be some organized support for these women.

First, for job training and employment, career advisor and specialists need to be provided so that the individuals' desire and their aptitude can be considered when choosing a job and job training.

Second, when receiving a job training or when employed, women with children should receive childcaring support, otherwise their activities will be restricted.

Third, after job training, an active employment connection should be provided to receive a stable income in the governmental aspect.

Fourth, women who are using domestic violence shelter may have different plan on divorce, employment, and job training. i.e.. So, whether

they leave early or leave during the job training, there should be a complete support for these people.

Fifth, women who receive the job training supported the education's fee by government,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But they also need to solve the economic problems such as transportation cost. For these women, more support is needed.

Sixth, for employment, one may subscribe the four bid insurance or make a personal cell-phone under her own name. So, more personal protection should be provided, because the injurers can easily detect these women.

Seventh, according to the revised law of 2006, these shelters are divided into short-term and long-term, however, one may have the flexibility to let the women stay up until 6month.

Eighth, after leaving the shelter and when economically independent, the victim should not be easily exposed to the injurer, or some kind of strong measure is needed for protection.

Ninth, through domestic violence, these women suffer physiological and emotional trouble, depression. As these symptoms cannot be cured in a short period, psychological consultation should be preceded, so that they can adapt well with society.